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22,]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 12, 22,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36조·제44조·제51조·제52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1조·제21조·제34조·제46조·제60조·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8조·제19조·제23조의2·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 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 3.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 4.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 5.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모, 사업지역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
- 6. "저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7. "사후환경영향조사"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 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 제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사업자(이하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제4조(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대행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행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분 재대행할 경우 재대행하고자 하는 분야와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재대행 부분 및 재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 개황 조사)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포함되는 지역 개황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계획 중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상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 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 등),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현황
 - 3.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 규제 내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 5.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 6. 취수장·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7.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8.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한함)
 - 9. 주변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 계획
 - 10. 교육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 현황
 - 11.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 제7조(환경 현황 조사) ① 환경 현황 조사는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환경DB(국가환경 측정망 자료, 생태환경 조사 자료 등), 문헌 등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환경DB, 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시는 국가 환경DB,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환경 현황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항목·기간·횟수 및 범위 등은 법 제11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 ③ 환경 현황의 성질상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 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이 2 이상의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심의 결과, 주민 등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 양식은 별표 2에 따른다.
 -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상지역 내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영향예측 및 분석을실시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⑧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 제9조(평가서의 분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환경영향평가등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여 300면 내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는 15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 제10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 현황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저감방안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가 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계획 또는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타 계획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경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평가 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고유성·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2조(저감방안의 수립) ① 저감방안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수립기관 또는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저감방안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 항목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 등의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저감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2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 3.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 5. 대안의 설정
 - 6. 평가 항목·범위 및 평가 방법의 설정 방안
 - 7.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제18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4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재 요령을 참조한다.
 - 1. 요약문
 -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8.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 제19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 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한다.
 - ④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20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분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본문은 가급적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한다.
-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명단을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은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상계획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부서에,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결과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함하여야 한다.

-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 5.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요약문
- 2. 정책계획의 개요
- 3. 정책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 5. 지역개황
-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9. 정책계획의 적정성
 -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1) 국가 환경 정책
- 2)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1) 공간 계획의 적정성
-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3) 환경 용량의 지속성
- 10.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2) 세부 평가 항목을 참조한다)

- 11. 종합평가 및 결론
- 12. 부록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라. 용어 해설 등
- ②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요약문
-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5. 지역 개황
-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11. 입지의 타당성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4) 수환경의 보전
 -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 1) 환경기준 부합성
-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12. 종합평가 및 결론
- 13. 부록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라. 용어 해설 등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서 및 변경협의서

- 제24조(재협의 시 평가서 내용)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제16조·제18조·제2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발기본계획 등의 변경 사유
 - 2. 개발기본계획 등의 변경 내용
 - 3. 사업 공정(필요 시 공사 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으며,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 제25조(변경협의서의 구성)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서의 구성은 영 제29조제5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 2.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 3. 개발기본계획의 입지의 타당성

제3편 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제26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 3. 토지이용계획안(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4. 지역 개황(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이하 이 편에서 같다)
 - 5. 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의 설정
 - 6. 약식절차 해당 여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7.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
 -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6의 환경영향평가서 기재 요령을 참조한다.
 - 1. 요약문
 - 2. 사업의 개요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 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 5.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6. 다음 각 목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 가. 평가 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 나.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 다.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 마. 종합 평가 및 결론
 -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제29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피해,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②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가능한 둘 이상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④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업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한다.
 - ⑤ 그 밖에 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30조(평가서 초안의 분량) 평가서 초안의 본문은 가급적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한다.
- 제31조(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영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 부서,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영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 4. 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 5.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는 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

제3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요약문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3. 지역 개황
-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 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 5.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7. 평가 항목별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의 결과
-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 9.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 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 11. 대안 설정 및 평가
- 12. 종합 평가 및 결론
- 13.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14. 전략화경영향평가 혐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화경영향평가 혐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 15. 부록
 -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 나. 사업 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

- 다. 용어 해설
- 라.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 마.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②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제34조(복합평가의 작성 등) ①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복합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 ② 복합평가서는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사업자는 복합평가서의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승인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은 각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의 장(이하 "주관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자로부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아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복합평가에 대한 협의기관이 각각 다를 경우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 2. 각 사업의 승인 등의 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복합평가서의 경우에는 사업내용 중 주된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거나 각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승인기관의 장 의 장
 - ⑤ 제4항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장은 복합평가서에 대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협의 내용이 다른 승인기 관의 장의 승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서 및 변경협의서

제35조(재협의 시 평가서의 내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26조·제28조·제3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 3. 사업공정(공사 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 ③ 협의기관의 장은 승인기관 장이 요청할 경우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재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 2. 기간이 경과되어 재협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재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변경협의서의 구성)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제5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37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60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개요
- 2. 지역 개황
-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4.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 5.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 가.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나. 대기질, 악취
 - 다.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바. 경관
 - 사. 전파장해, 일조장해
 - 아. 인구, 주거, 산업
- 7. 부록
 - 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다. 용어 해설 등
 -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38조(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서 작성)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계획 및 주요 환경 현황
- 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 3. 중점 환경영향 검토 체크리스트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6장 약식평가서

- 제39조(약식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65조에 따른 약식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 2.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 ② 약식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제28조부터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제40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별표 9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환경영향평 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조사 항목 등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1조(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5편 보존대상 기초자료 등

- 제42조(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① 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경현황 분야: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저질), 토양, 소음·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 2. 생태계 분야 : 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 ②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 제4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2013-171호, 2013, 12, 27. >

-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고시와의 관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환경부고시 2010-126호) 및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8)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2015-141호, 2015. 8. 20.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2호, 2016. 1. 21. >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15호, 2017. 11. 27. >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05호, 2018. 12. 12. >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89호, 2020. 12. 22.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업자의 요건(제4조 관련)

업무분야	자 격 요 건
1. 기상 관측	가.「기상산업진홍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상사업 (기상컨설팅업) 등록자
2. 대기, 수질 모델 링	가.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나.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환경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홍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 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라.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 설팅 또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3. 수리-수문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토목 공학과, 농업토목과, 환경공학과 및 환경과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 소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홍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 설부문 농어업토목, 수자원,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상하수 도시스템설계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4. 해양환경조사	가.「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해양생태조사에 한함)
5. 토양 2019.7. 오염 21까지 도검 사	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은 자 다만,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와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와 그 주변지 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제대행 할 수 있는 업 무에서 제외함
2019.7. 22부터	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6. 지 특이지 형 형지질 지 조사 질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지질 및 지구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홍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 설부문 토질·지질 및 기초, 측량·지적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된 업체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지질조 사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配料 个	가. 「지하수법」제27조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합령체로센터

업무분야	자 격 요 건
영향조 사	
7. 페기물 성분분 석, 발생량 예 측	 가.「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의한 분석기관(성분분석에 한함) 나.「엔지니어링산업진홍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부문 폐기물처리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설팅 및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으로 등록된 된 업체(발생량 예측에 한함)
8. 소음·진동 예 측, 모델링	가.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소음·진동분야)를 등록한 업체 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설팅 또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된 업체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등이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라.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9. 경관분석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환경컨설 팅,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그래픽디자인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10. 전파장해 측 정 및 영향 예측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전기 전자·통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전기전 자공학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홍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한 전기전자부문, 통신전기처리부문, 응용이학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11. 일조장해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기상산업진홍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 (기상컨설팅업) 등록자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가.「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측정기관
13. 기타항목(상 기 1~12를 제 외한 항목으 로 협의기관 장이 인정한 항목)	가. 해당 항목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신고·등록 등을 한 업체 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한 업체가 없을 경우「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 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해당 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체 또 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소

[별표 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제8조 관련)

1. 작성구분

자연생태환경조사는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작성방법

- 가. 자연생태환경조사는 제1호에 의한 분야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지조사표를 작성, 보관 한다.
- 1) 조사지점별로 현지조사표를 현지에서 수기로 작성(실내동정이 필요한 사항은 예외)
 - 2) 조사자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이 어야 하며, 자료 작성 후 서명·날인
 - 3) 조사일시를 분 단위까지 기록
 - 4) 조사지역은 지점명, 좌표, 조사면적 등을 기록
 - 5) 조사내용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서식에 없는 중요한 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시 별도기록
 - 6) 주민 등을 통한 탐문조사 시에는 탐문 대상자의 개략 인적사항 기록
 - 나. 가목의 현지조사표를 사업유형이나 현지여건 등의 이유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다. 현지확인 조사자, 조사일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장신청서, 차량운행일지,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동영상 자료 등)를 현지조사표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 라. 현장조사 사진은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표

식 생 조 사 표

계획/사업 명칭															
조시	·일자(시간):			조기	나?	자 :			(2	네명)	해	발 :		m
조시) 번호 :						화.	<u></u> T	N	:		면?	척 :		m²
조시	·치역 :] =1.		E	:		경/	사 :		٥
상관] 쉬생 :						군리	 명				방-	위 :		
	치형	: □십	삼청, □]산능선	, □사면	(심	}, ह ,ō	차, ഥ ,산	马),	□계곡/□:	조금능	ţ은 妆	릥치, []평지	
'I'	층위별 높이(m) 쉬피율(%)					우첨총 특이사항 :									
쬬둳	삼층(∏)														
৽}ফ	¹ 목층(T2)														
관투	유 흥 (S)														
초년	!충 (H)														
0]7	기충(M)														
우침	총 DBH	최대	(cm), 중간(cm), #	최2	소(cm)							
교목층(T1) No				아꼬	.목	'हे (T'	2)		관목층	(S)		초본층(H)			
140	총명	3	최도	DBH	총명	3		酀도		총명	3 2 -	토	ž	총명	파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식생 단면도 조사표

∄)
1
우 안
"
1
우 안
- T.
-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식 물 상 조 사 표

ਸ ਸ	획/사업 명칭					
조사	일자(시간) :			조사기	자: (서명) 해발: m
조사	번호 :				_ _ 특이사항 :	
조사	지첨 :					
조사		— + 1 →1		+1 → +1		
	작시, □주거시, [심하천, □산림하		, □공창, □산림, □ ·닷가, □기타(시구시,)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육상동물상 현지조사표(포유류)

계획/사업 명칭									
조사 일자(시간) :		조사자 :	(서명)	해발 :	m				
조사번호 :		조사지점 :							
총명	흔척	구분	특이사항						

※ (혼적구분) F : 족혼, D : 배설물, V : 목견, N : 둥지, T : 터널, 기타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육상동물상 현지조사표(조류)

계획/사업 명칭									
조사 일자(시간) :		조사자 :	(서명)	해발 :	m				
조사번호 :		조사지점 :							
총명	개최	 수							
	•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육상동물상 현지조사표(양서·파충류)

계획/사업 명칭											
조사 일자(시간) :					조사자 :		해발 :	m			
조사번호 :					조사지점 :						
총명			관칠	내용				종별특이사항			
-0 0	난却	유생	성체	사체	소리	기타		.o 5.4 - 1/1 o			
	•	•	기	타 특여	기사항	•	•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육상동물상 현지조사표(육상곤충)

계출	획/사업 명칭											
조사	일자(시간) :			조	사자 :	(서명)	해발 :	m				
조사	번호 :			조사지점 :								
No.	총명	조사방법	조사지(심호)			관찰니						
			<u>현황</u>		성충	아성충	유충	기타				
1				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기타 특	·이 시) 항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류 현지조사표

계획/사업 명	칭										
조사일자(시간)) :					조사자	:	(⁾	1명)	해발 :	m
조사번호 :						조사지	첨 :				
날 씨	1	밝음, 호	림, (약	· . 충	· 장)	비, (약	. 중 .	장) 는	호/(약	: . 충 .	강) 바람
채	집방법				유	· 속 수 색					
촉대 : 회	투	투망 : 회 빠름 1				통	청체 밝음			보통	탁함
제방형	불태		7	1연	돌	망태	석	축	콘,	크리트	옹벽
주변토지이	용현	황	경	착지	추	거지	광:	창	-	산림	기타
채 집 종								기타 7	하천현	황 등 특	기사항
총명				체수	1		수심(목·	측), 하측	독(목 <i>측</i>	· (목), 수폭(목	·측), 수중보 및
	7	치어	,	성체		계	기타	인공구	조물,	하상재료	. 등을 기채
							-				
							-				
							-				
							-				
							-				
							-				
							-				
							-				
							-				
							1				
							-				
							1				
							1				
							1				
							1				
							1				
							1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현지조사표

계획/사업	명칭											
조사일자(시	간):				조사자 : (서명)							
조사번호 :					조사지침	∄ :						
날씨		밝음,	흐림/ (역	F, 중, 장)) 비, (약, 중, 강) 눈, (약, 중, 강) 바람							
조사방법		청	량 : ()화		청 성:						
22/1.0.8	(30,	50) 서버	샘플러,	트레지/	에크만							
			유역이용					오염원				
* ~1 -1 -1	□ 산림] 농경지		□ 카4	축분노의	유입				
유역환경	□ 목초] 공장지대		_	활하수의	유입				
	□ 마을] 주거밀집		-	총 공사					
	□ 상가,	음식점] 기타()	미기티	^타 ()		
	범람원의	이용: 🗆	자연형,	□ 농경지	, □ 도로,	, 🗆 추치	ŀ창, □ :	조킹코스,	, 🗆 기타	()		
수변환경			제방(좌인	ł)				제방(우인	ŀ)			
1 2 2 2 0	자연형	석축	돌망태	콘블럭	콘수칙	자연형	석축	돌망태	콘블럭	콘수칙		
기타 특이사항	하상구조	·, 하천유학		-	(목촉), 수), 투명도				물, 서식 2	서 교란,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현지조사표

계획/사업	명칭											
조사일자(시:	간) :				조사	작 :	(서명	∄)				
조사번호 :					조사	조사지점 :						
날씨		밝음,	, 흐림	, (약, 중, 7) 비, (약, 중, 장) 눈, (약, 중, 장) 바람							
		청	량 : ()화		청 성 :						
조사방법	0.5 혹			크톤), 2X2 사조류)	혹은	.은 플랑크톤 넷, 부착기칠						
		Ĥ	-역이	<u>B</u> -				오염원				
유역환경	□ 산림□ 목초□ 마을□ 상가			_ □ 공창지	농경지 □ 가축분뇨의 유입 공창지대 □ 생활하수의 유입 추거밀집지 □ 각종 공사 기타() □ 기타()		
	범람원의	이용: 🗆	자연학	형,□ 농경	지, 🗆 도	.로, 🗆 주	*차창, □	조킹코스	, 🗌 기타	·()		
수 변환경		, ,	세방(조 '	ት 안)		제방(우안)						
1 220	자연형	석축	돌망티	채 콘블럭	콘수칙	자연형	석축	돌망태	콘블럭	콘수칙		
기타 특이사항	하상구조	<u> </u> 5, 하천유		 폭(목측) <i>, -</i> 영균수심(목	-	•			물, 서식:	서 교란 <i>,</i>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지조사표(탐문조사)

계획/사업								
조사일자(시간):						조사자 : (서명)		
조사번호 :						조사지점 :		
탐 문 대 상 자								
성 명						나 이		
추 소								
거주기간						성 별		
인척사항 ㅁ	기채계	다시	· 유					
총명	유	무		출현시기]	출현위치	출현	기타
			1년나	5년내	5년천		개체수	
특이사항 및 기타								

4.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연생태환경분야 환경현황 조사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평가대상 계획별 또는 사업별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타란에는 신뢰성, 최근동향 및 변화양상 등 기록

자연생태환경조사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름.

가, 조사 개요

1) 단계별 조사의 필요성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의 기본적인 틀은 광역조사와 현지조사의 2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조사는 지역적인 생태계의 개황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환 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과 지역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하 다. 특히 광역조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주요종은 현지조사시 조사시기 및 조사범위 등을 선정할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현지조사는 광역조사 후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분류군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및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예측과 처감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현지조사에서는 광역조사에서 확인된 주요종의 서 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조사의 원칙

가) 광역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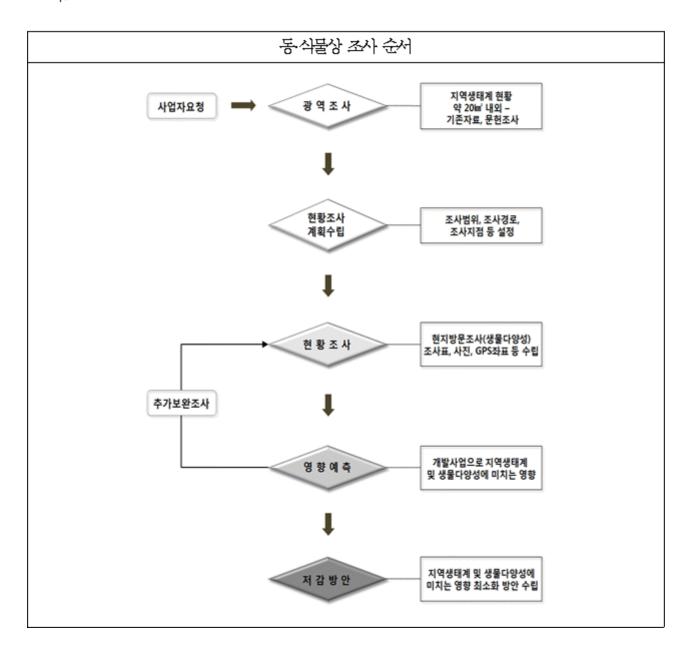
광역조사는 생태·자연도, 생태축, 동·식물상 및 식생의 개요, 주요종의 분포현황, 각종 자연공원이나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법정보호지역, 지역생태계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단, 주요종의 범위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로 한정하며, 기타 학술적 가치 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을 추가할 수 있다. 광역조사는 기존의 자료와 각종 문헌을 통해서 문서작업(Paper Work)으로 마무리한다.

기존자료 등 문헌조사의 범위는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다. 단, 선형사업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 각각 1 ㎞의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나) 현지조사

현지조사의 분야는 식물,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등의 분류군에 대해 조사자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단, 플랑크톤과 부착조류는 하천정비사업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며, 정수역에서는 플랑크톤만 조사하고, 유수역에서는 부착조류만 조사한다. 일반적인 조사방법은 해당 분류군별로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된 각종 생태조사방법을 참고하여 널리 알려진 공통사항에 따른다. 조사범위 조사시기, 조사경로 등은 본 것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바와 되는 지수 보다 되었다.

다.



나, 광역조사

1) 조사목적

광역조사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광역적인 차원의 영향예측과 사업대상지 일원의 현 지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사 범위

광역조사는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선형사업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 각각 1㎞의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면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지역생태계약 20㎢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해상도의 생태·자연도 및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선형사업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 각각 1㎞ 범위의 생태·자연도와 최신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기존자료 등 문헌조사는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BIASS),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의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지역에 5년 이내의 최신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기타 문헌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학술조사·연구보고서에 한하여 추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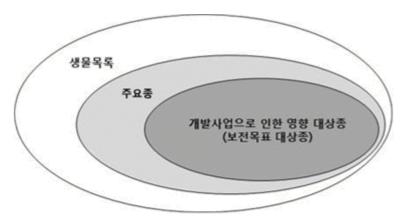
3) 조사 내용

지역생태계의 생태·자연도 및 동·식물상 개요, 주요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 등이 매우 높은 종)의 분포 현황, 생태축, 자연환경 관련 법적보호지역, 주요 식생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사업대상지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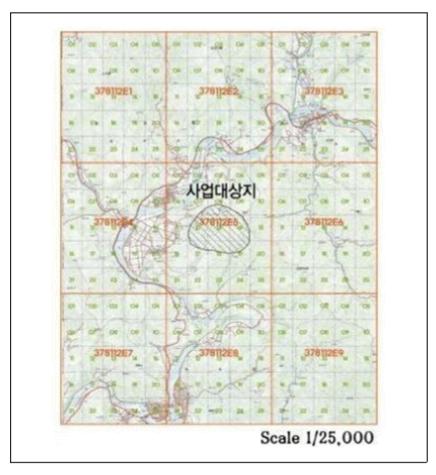
4) 조사 방법

사업대상지의 조사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해당지역의 생태·자연도와 전국자연환경 조사보고서 등 기존자료와 문헌을 찾아서 주요종의 분포현황, 주요 생물서식공간(특 이식생, 습지 등), 법적보호지역(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지역생태계 약 20㎢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해상도의 생태·자연도 및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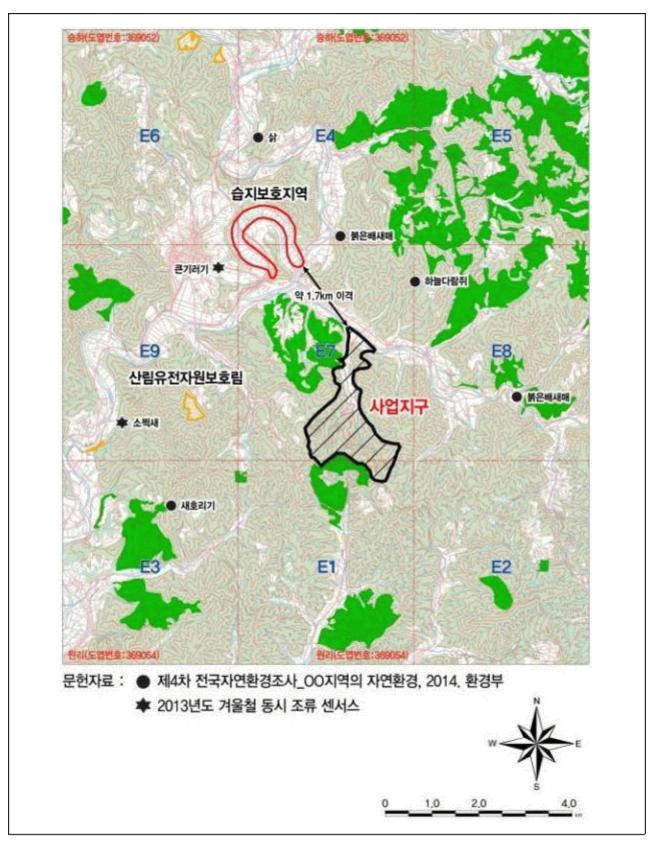
특히, 주요종에 대해서는 행동반경과 서식범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생태계의 특성과 사업대상지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모식도 등을 작성해서 제시할 수 있다.



<동·식물상 조사대상>



<광역조사 범위 예시>



<광역조사 대상지 사례>

다. 현지조사

1) 식물상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을 추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 범위

조사범위는 사업대상지, 사업유형, 집수역, 영향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면적사업은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100m, 선형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50m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유형이나 지형적 특성 등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천의 경우에는 제외지 내로 한정하여 설정한다.

사전문헌조사에 따라 대상지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주요 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포함한다.

다) 조사 경로

조사대상지의 지형적 여건을 파악하여 다양한 입지(습지, 계곡, 사면, 능선, 임연부 등)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경로를 선정한다.

라) 조사 시기

일반적으로 봄조사는 3월~5월, 여름조사는 6~8월, 가을조사는 9월~10월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봄조사 시기는 위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조사자가 상기 조사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시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자는 조사대상지 현황을 토대로 해당 조사시기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타 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조사 내용

관속식물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생태계교란식물, 산림청 희귀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수, 노거수,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조사한다.

바) 조사 방법

조사경로별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찰·확인되는 모든 관속식물의 출현 종을 기재한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조사된 소산식물은 분류체계에 따라 목록을 정리하고,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 을 따른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은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GPS 좌표, 지형적인 특징(산지능선, 사면, 하천, 습지, 계곡, 해발 등), 식생현황(활엽수, 침엽수, 초지, 농경지 등)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사) 주요 식물종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1) 광릉요강꽃(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서식지 특성: 해발 300~1,100m 산지 사면의 양지바르고 배수가 양호한 음지 분포: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소수 분포 생육 시기: 4~5월경 개화

비고: 낮은 결실률, 무분별한 채취 위협, 일부 개체군은 주변에 철책 설치하여 보호

(2) 가시오갈피나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깊은 산지의 습윤한 나무 그늘 아래 배수가 양호한 곳, 주로 계곡 주 변부

분포: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지역, 강원도 이북에 주로 분포

생육 시기: 6~7월경 개화, 9~10월경 열매 성숙

비고: 무분별한 채취 위협, 최근 중국산 재배가 확대되고 있음

(3) 개병풍(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깊은 계곡 그늘진 곳, 깊은 산 북쪽 경사면의 비옥한 토양, 석회암 지대

분포: 강원도(전 세계적인 분포상 남방한계선 지역임)

생육 시기: 6~7월경 개화, 8~10월경 열매 성숙

비고: 잎과 꽃의 관상을 위한 무분별한 채취 위협

(4) 기생꽃(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숲속 반음지의 바위 근처에 부엽토가 거의 없고 토심이 매우 얕은 곳

분포: 강원도, 경상도

생육 시기: 7~8월경 개화

비고: 무温增한 채취 위협, 자생지 훼손 35

(5) 끈끈이귀개(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해안가 들판, 해안가 낮은 산지의 양지바른 습지 주변 초지, 정리가 잘 된 무덤가에 무리지어 서식

분포: 전라남도 해안가

생육 시기: 5~7월경 개화

비고: 무분별한 채취 위협, 자생지 훼손

(6) 노랑붓꽃(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산지 낮은 사면의 숲 가장자리나 계곡 주변 서식지, 습한 토양 선호 분포: 전라도, 경상북도 일부

생육 시기: 4~5월경 개화

비고: 무분별한 채취 위협, 자생지 훼손

(7)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강변 또는 냇가의 모래땅이나 자갈밭

분포: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일부

생육 시기: 8~9월경 개화

비고: 하천 범람으로 인한 서식지 교란, 자생지 개발

(8) 독미나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숲 가장자리, 산지 습지, 하천, 오래된 저수지 주변에 서식

분포: 강원도, 전라북도

생육 시기: 6~8월경 개화

비고: 자생지 개발

(9) 매화마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주로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논·수로, 물이 채워지지 않은 곳에서도 서식

분포: 서해안, 동해안 일부

생육 시기: 4~5월경 개화

비고: 겨울철 논에서 물을 빼거나 제초제 논같이 및 택지개발 등으로 서식지 훼손

(10) 산작약(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산지 낙엽활엽수림과 혼효림의 반 그늘진 곳, 습기가 많은 토양

분포: 강원도, 충청도

생육 시기: 5~6월경 개화

비고: 사진 촬영과 무분별한 채취 위협

(11) 선제비꽃(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저지대 습지에서 갈대나 물억새와 같은 정수식물에 기대어 서식

분포: 경기도 수원, 경상남도 양산

생육 시기: 5~6월경 개화, 6~7월경 열매 성숙

비고: 하천 개발 및 정비 사업 등 자생지 개발

(12) 세뿔투구꽃(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해발 200~600m, 경사도 10~30도 정도의 낙엽활엽수가 우거진 전석지 등

분포: 전라남도 백운산, 경상북도 청량산, 경상남도 지리산

생육 시기: 7~9월경 개화

비고: 전석지의 자연석 교란, 약용식물로 무분별한 채취 위협

(13) 자주땅귀개(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특성: 물기가 있는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 등

분포: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생육 시기: 8~9월경 개화

비고: 자생지 개발

아) 조사결과의 정리

식물목록의 정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귀화식물, 고유종, 생태계교란 식물 등을 함께 표기한다. 정리된 식물목록을 토대로 생활형 분석, 도시화지수 및 귀화율 등을 산출하여 사업대상지의 입지특성을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자) 기타 참고사항

식물의 공간적 분포패턴은 중에 따라 집피(集塊), 무작위, 균일적, 연속적 혹은 불 연속적 분포패턴을 보이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히 법정보호종 등 주 요종의 분포확인시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시 주요 식 물종의 생태 및 분포특성에 대한 정보는 매우 유용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습 득하여 정보부족에 의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식생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우수한 식생자원과 주요 생물서식공간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 범위

조사범위는 사업대상지, 사업유형, 집수역, 영향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면적사업은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100m, 선형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50m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유형이나 지형적 특성 등에 따라다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천의 경우에는 제외지 내로 한정하여 설정한다.

사전문헌조사에 따라 대상지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주요 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포함한다.

다) 조사 경로

조사대상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상관이 가능한 경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입지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식생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조사 시기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0월)에 조사를 실시한다. 현존식생도 작성, 식생보 전등급의 판정 등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겨울(11월~2월)조사도 가능하다. 단, 조 사자가 상기 조사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시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자는 조사대상지 현황을 토대로 해당 조사시기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조사 내용

현존식생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존식생도를 작성하고, 식생조사표를 수집한다.

바) 조사 방법

식생조사표는 Braun-Blanquet(1964)에 의한 전추정법에 따라 수집하고 현존식생도 및 기타 식생 현지조사는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식생조사표는 식생의 상관적 유형에 따라 적절히 수집하되 삼림식생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식생의 자연성(식생보전등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군탁의 유형별로 1개이상 수집한다. 단, 2종의 우점종에 의해 서로 다른 군탁으로 명명된 경우(예: 소나무-신갈나뮸군락과 신갈나무-소나무군락 등)에는 2개 군락 중 1개의 군락에서 되었다.

생조사표를 수집하여도 무방하며, 동일 군락(2종의 우점종에 의해 서로 다른 군락으로 명명된 경우 포함)의 규모가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당 1개의 식생조사표를 추가한다.

그 외 보전가치가 높은 특이식생의 경우는 군락유형별로 1개 이상의 식생조사표를 수집한다. 기타 임연식생, 관목형식생, 초지형식생, 경작지식생 등 보전가치가 낮은 식생유형에 대해서는 식생조사표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군락의 최소면적은 2,500㎡로 한다.

사) 조사결과의 정리

식생조사 결과에 의해 현존식생도를 작성하고, 군락별로 식생보전등급을 판정하여 식생보전등급도를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군락단면도를 작성하고, 하천의 경우 에는 하천식생단면도를 작성할 수도 있다.

아) 기타 참고사항

사업대상지 내 묵논 습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정밀현존식생도 작성 등)를 통하여 보전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보전가치의 판단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식생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자연림과 식재수종이 혼생하여 식생보전등급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은 항공사진이나 드론에 의해 촬영한 근접사진 등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삼림식생의 경우 식생보전 표등급과 표등급 중에서 숲의 천이진행 정도에 따라 판정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기타 설명 자료 등 보다 충분한 판정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포유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처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 범위

면적사업은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300m, 선형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조사 시기

포유류 뻔체는 박쥐류 등 동면하는 종을 3체외한 소·중·대형동물의 조수건병행정(첫

월~12월) 가능하다.

라) 조사 내용

포유동물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마) 조사 방법

포유류는 아래와 같이 목견조사, 흔적조사, 포획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현 지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조사와 문헌조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 종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은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GPS 좌표, 지형적인 특징(산지능선, 사면, 하천, 계곡, 해발 등), 식생현황(활엽수, 침엽수, 초지 등)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1) 목견조사

현장에서 선정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직접목견에 의한 종의 유무를 확인하고, 주변 서식환경, 개체수, 고도 등 다양한 생태적인 습성과 서식 정보를 기록한다. 해당지역에 동굴이 있을 경우 박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흔적조사

배설물(scat), 쪽적(footprint), 털(hair), 먹이섭식흔적(food foraging), 굴(ground nest) 등의 흔적을 통해 서식 유무를 확인한다. 중·대형 포유류의 경우는 계획노선 내·외부를 따라 직접관찰, 분변, 쪽적, 등지, 굴 등의 조사(Field sign법)를 실시한다. 흔적조사시 배설물이나 발자국 등의 관찰은 땅이 질거나 눈이 쌓인 겨울철이가장 적기이다.

(3) 포획조사

트랩을 이용하여 생포한 개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개 쥐과(Muridae), 첨서과 (Soricidae)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저녁에 설치하고 다음날 아침 회수하여 포획 종을 동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형 포유류인 설치류는 오후에 생포를(Sherman live trap)을 설치하여 다음날 포획된 종들을 동정 후 방사한다.

바) 주요 포유류의 분포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1)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서식 특성: 식생이 풍부하고 먹잇감이 많은 하천이나 호수, 해안가 등에 서식 분포: 접굴적으로 넓게 분포하지만 하천 및 호수 등에 주로 분포 번식: 1~2월(교미) 2~4마리의 새끼를 낳음

조사방법: 호수 및 하천변 바위, 교각 하부 등 집중 조사(분변, 식혼발자국, 무인카메라 등)

비고: 서식지 파괴와 수질오염, 어망에 의한 혼획, 하천에 인접한 도로에서의 로 드킬

(2) 삵(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특성: 산림의 계곡, 연안, 관목으로 뒤덮인 산간 개울 등

분포: 제주도와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

번식: 2~3월에 교미하여 3~5마리의 새끼를 낳음

조사방법: 산지의 능선, 임도, 농로 등에서 분변 등 집중 조사(야간 손전등, 무인카메라 등)

비고: 주로 야간에 활동하지만 산림에서 사냥할 때는 간혹 낮에도 볼 수가 있음

(3)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특성: 주로 산악지역에 서식하며 울창한 침엽수림에서 2~3마리씩 무리지어 다 님

분포: 전국의 내륙 산악지대

번식: 짝짓기 시기는 2~3월 및 6~8월이며 새끼를 평균 2~3마리(최대 5마리) 낳음

비고: 임도건설, 수종갱신, 산악도로 건설 등에 의한 서식지 파괴, 모피를 위한 남 획

조사방법: 산지의 능선, 임도, 나무뿌리 및 돌 등을 집중 조사(야간 손전등, 무인카메라 등)

(4) 무산쇠쪽제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특성: 1,000~2,500m의 고도를 선호하지만 다양한 서식지에 확인

분포: 제주도와 울릉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

번식: 짝짓기 시기는 4~7월이며 평균 6마리의 새끼를 낳음

비고: 모피를 위한 남획, 서식지 파괴

조사방법: 산지의 능선, 임도, 나무뿌리 및 돌 등을 집중 조사(야간 손전등, 무인카메라 등)

(5) 하늘다람쥐(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특성: 성숙한 활엽수립대 등 전국의 산악지대 자연림 및 인공 조림지에 서 식

분포: 제주도와 울릉도,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

번식: 1년에서~2회 이루어지며 2~6마리의 세끼를 낳음

비고: 산림벌채, 도로, 댐 등의 건설로 인한 서식지 파괴, 애완동물을 위한 포획 조사방법: 활엽수림 내 침엽수가 섞여 있는 지역(흥고직경 20~30cm 사이)의 나뭇 가지 사이 및 나무뿌리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분변 등)

사) 조사 결과의 정리

포유류 목록의 정리는 법정보호종, 외래종, 생태계교란종 등을 함께 표기한다.

4) 조류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 범위

면적사업은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300m, 선형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조사 시기

조류는 이동성이 큰 종이므로 계절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봄(3~5월), 여름(6~9월), 가을(10~11월), 겨울(12~2월)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월동조류(겨울철새: 11월~2월), 번식조류(텃새, 여름철새: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한다.

산림지역은 조류의 번식기인 5월과 6월초에 조사를 실시하고, 월동지역은 가을조사를 11월에 시행하거나 겨울에 2회 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 번식하는 야행성 맹금류(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며 번식하는 종인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 등)의 번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기는 2월~4 월에 야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갯벌지역의 조사는 물때표에 따라 만조시 높이(고조)가 900cm 이상일 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사자가 상기 조사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시기에 현지조 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자는 조사대상지 현황을 토대로 해당 조사시기를 선정한 객 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조사 내용

조류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집단번식지,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법정보호종은 번식유무 또는 지속적인 서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⁴²법정보호종이 관찰되면 이들³¹법정보호

는 지속적인 서식유무(취식지역 또는 휴식지역 이용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한다.

집단번식지역에 대한 조사시 내륙은 백로와 조류 집단서식지, 섬은 갈매기류 집단 서식지 등을 조사한다. 집단번식지 조사는 번식지역의 종과 개체수 그리고 취식지 역 조사를 포함한다.

마) 조사 방법

조류의 활동반경과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선조사법(line census)과 정점조사법(spot census)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탁란성 조류(예, 뻐꾸기 등)나 맹금류 등과 같이 활동 영역이 비교적 넓은 조류의 경우 개체수 산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찰빈도가 높은 위치에서 1회 관찰된 것으로 기재한다.

명금류와 같이 번식기에 텃세권을 형성하는 종과 번식 개체에 대한 조사는 반복적인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적인 개체수 산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사기간 가장 많이 발견된 개체수를 최종 집계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은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GPS 좌표, 지형적인 특징(산지능선, 사면, 하천, 습지, 계곡, 해발 등), 식생현황(활엽수, 침엽수, 초지, 농경지 등)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1) 선조사법(line census)

선조사법은 1km/30min 속도로 보행하면서 쌍안경으로 현장 주변에서 관찰되는 조류를 동정, 기록하는 방법이다. 조사경로를 따르면서 좌·우 폭 40~50m 범위 내 조류를 관찰하거나 조류 울음소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선은 식생, 지형 등을 고려해 다양한 환경이 포함될 수 있게 설정한다.

지그재그법은 선정된 조사구역을 전부 포함시킬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되 동일 개체를 중복하여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선법은 선정된 조사구역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룰 때, 혹은 넓은 평야 조사시 용이한 방법이다.

(2) 정점조사법(spot census)

정점조사법은 한 장소에 10분간 머물면서 현장 주변에서 관찰되는 종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넓은 범위내의 균일한 환경 중 조류의 종류,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한 방 법으로 조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일정면적)를 조사구역으로 선정하여 전수조사 를 시행한다.

구획법은 조사지역을 일정거리의 격자(방안, mesh)로 나누고, 각 격자별로 조사를—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시하여 정량 분석하는 방법으로, 넓은 범위의 조사구역에 대해 표본조사법으로 사용한다.

정위기록법은 구역 내의 전망이 모두 감지되는 지역을 선정 후 망원경을 이용하여 전수조사하는 방법으로, 호소, 강 하구, 습지, 해안, 평야 등 넓은 조사범위에 대해 사용한다.

바) 조사 결과의 정리

조류 목록의 정리는 법정보호종, 생활형(텃새, 철새, 나그네새) 등을 함께 표기한다.

5) 양서·파충류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 범위

면적사업은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100m, 선형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50m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조사 시기

조사시기의 계절은 봄(2~5월), 여름(6~8월), 가을(9~10월)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종에 따라서는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조사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2월말~5월 : 도룡뇽, 한국산개구리, 두꺼비 등

4월~5월 : 무당개구리, 물두꺼비, 청개구리 등

5월(6월)~7월 : 금개구리, 참개구리 등

맹꽁이(법정보호종) : 장마철 조사 필수

단, 조사자가 상기 조사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시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자는 조사대상지 현황을 토대로 해당 조사시기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조사 내용

양서·파충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마) 조사 방법

조사지역 중에서 양서·파충류의 생리·생태적인 습성을 고려하여 수계를 중심으로 좌·우와 저지대 경작지, 초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양서류의 경우는 산란장(수환경)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은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GPS 좌표, 지형적인 특징(소류지, 논, 산지, 초지, 수로 등)등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양서·파충류의 현지조사 방법은 직접확인 방법(포획·관찰)과 간접확인 방법(청문· Track·Field-sign)을 병행하여 수행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무미목류

무미목(개구리류)은 선정된 조사지역내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따라 좌·우 20m 간 격으로 이동 중인 개체와 바위틈 혹은 계곡, 수로 그리고 처습지 주변과 초지에서 Plastic 플채(망목: 5㎜x5㎜, 길이: 3단), Stainless 플채(망목:1㎜×1㎜, 길이: 30㎝) 또는 곤충포획용 포충망을 이용하여 채집하며, 수변과 인접하여 서식하는 한국산개구리, 옴개구리 등은 어류 채집용 쪽대(망목: 5㎜x5㎜)를 이용하여 채집한다.

(2) 유미목류

유미목(도롱뇽류)의 꼬리치레도롱뇽과 도롱뇽은 물이 흐르는 하천 내에서 유속 흐름이 완만한 곳을 찾아 작은 바위를 들추어 유생 확인용 뜰채를 이용하여 유생 을 포획할 수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작은 웅덩이에 산란한 알을 찾아 종을 확인 할 수 있다. 주간에 성체는 바위틈에서 확인, 음지쪽 활엽수림 내에 쓰러져 있는 고사목을 들추거나, 유생시기가 없는 이끼도롱뇽은 산지 내 계곡주변의 그늘진 바 위지대나 자갈더미를 들추어 서식유무를 확인한다.

(3) 파충류

파충류 중 도마뱀류는 묵정밭, 초지주변, 햇볕이 잘 드는 곳과 계곡변에 쌓여 있는 돌을 들추어 확인하거나, 도로변에 이동중인 개체는 곤충채집용 Grabber와 포충망를 이용하여 채집하고, 뱀류의 허물이나 흔적(Sloughs and Sand track)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한다.

- 바) 주요 양서·파충류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 (1) 수원청개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서식지 주요 유형 : 논, 습지 등의 정수 환경지역

분포 : 수도권, 중부지역의 서해안 습지지역

출현시기: 4~6월

조사방법: 주·야간 청음 및 구애 행동 관찰

(2) 구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전통적인 주거 환경주변지역으로 강원, 서해도서지역

분포 :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

출현시기: 4~10월

조사방법 : 육안관찰 및 뱀 수집 도구를 사용한 일시 포획

(3) 금개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 논, 습지 주변의 수로, 웅덩이 등 정수 환경지역

분포 :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나 서남부 지역에 편중됨

출현시기 : 4~9월

조사방법 : 육안관찰 및 청음 조사, 야간조사

(4)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 전통적 주거지역 주변의 저습지, 수도권, 제주도에 우세하게 서식

분포 :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

출현시기 : 6월에서 8월이 확인 적기

조사방법: 청음조사, 목견, 알과 유생 확인

(5) 표범장지뱀(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 마사토 또는 모래사구 지형을 지닌 지역

분포: 하천의 사구, 해안사구, 산지 구릉

출현시기: 4~10월

조사방법 : 육안관찰 및 포충망을 사용한 일시 포획

사) 조사 결과의 정리

양서·파충류 목록의 정리는 법정보호종, 외래종, 생태계교란종 등을 함께 표기한다.

아) 기타 참고사항

각 종의 특성에 따라 생태를 반영한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생태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주요종의 서식이 예상될 경우 트랩법, Play back 법 등의 조사 방법을 시행한다.

6) 육상곤충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육상곤충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 범위

면적사업은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100m, 선형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50m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조사 시기

조사시기는 4월 중순~10월 중순 사이에 설정한다. 6월~8월초 사이는 성충의 최대 출현시기임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설정한다. 단, 조사자가 상기 조사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시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자는 조사대상지 현황을 토대로 해당 조사시기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조사 내용

육상곤충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마) 조사 방법

육상곤충 조사시 초지, 숲, 가장자리, 산림 등 해당 지역의 주요 서식지 유형별로 각 1개 지점 이상의 조사지점을 설정한다. 아래의 각 조사방법은 조사지의 특성과 조사 목적에 따라 선택 적용하며 경우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은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GPS 좌표, 지형적인 특징(산지능선, 사면, 하천, 계곡, 해발 등), 식생현황(활엽수, 침엽수, 초지, 농경지 등)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1) 쓸어잡기(Sweeping)

곤충 채집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포충망을 이용하여 풀이나 나뭇가지를 쓸어서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의 채집이 가능하다.

(2) 털어잡기(Beating)

나뭇가지, 덤불 등에 붙어서 서식하는 곤충을 채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뭇가지 아래에 일정 네트를 설치 후 나뭇가지를 막대기로 털어 아래로 떨어진 곤충을 채 집하는 방법이다.

(3) 함정트랩(Pit-fall trap)

지표배쁔쩅 곤충의 채집을 위해 사용하는 생법으로 트랩 내부에 유인효과 뿌렸으로

먹이물을 넣어 설치한 후 다음날 수거하는 방법이다.

(4) 야간채집(Light trap)

야간에 빛을 따라 이동하는 습성이 있는 주광성 곤충의 채집을 위해 유아등을 설 치하는 방법으로 일몰 후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사진촬영 및 수 거한다.

(5) 육안조사(Searching and Netting)

임도, 산책로, 임연 등을 이동하며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육안으로 동정이 가능한 종은 사진촬영 및 기재한다.

- 바) 주요 육상곤충류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 (1) 꼬마잠자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 휴경 논, 산지 습지

분포 :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

출현시기 : 5~8월

조사방법 : 육안관찰 및 포충망을 사용한 일시 포획

(2) 대모잠자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 유기물이 많은 연못, 소하천 및 주변 구릉지

분포 :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

출현시기: 4~6월

조사방법 : 육안관찰 및 포충망을 사용한 일시 포획

(3) 붉은점모시나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 기린초가 많은 바위산 및 벌채지 등

분포 :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

출현시기 : 5월 중순~6월 중순

조사방법 : 육안관찰 및 포충망을 사용한 일시 포획

(4) 쌍꼬리부전나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 낮은 구릉지 및 마을 주변 산지

분포 :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

출현시기: 6월 중순~8월초

조사방법 : 육안관찰 및 포충망을 사용한 일시 포획

비고 : 쵦교 서울시 등 도시 주변에서 관찰지가 증가하는 추세임

(5) 왕은점표범나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 낮은 구릉지 및 마을 주변 산지

분포 :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

출현시기 : 5월 중순~10월초

조사방법 : 육안관찰 및 포충망을 사용한 일시 포획

비고 : 육상곤충류 중 가장 분포 폭이 넓고 빈번하게 관찰되는 법정보호종임

(6)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지 주요 유형 : 낮은 구릉지 및 마을 주변 산지

분포 : 중남부 지역에 국지적으로 분포(제천시, 충주시 등)

출현시기 : 5월 중순~6월 중순

조사방법 : 육안관찰 및 포충망을 사용한 일시 포획

바) 조사 결과의 정리

육상곤충류 목록의 정리는 법정보호종, 외래종, 생태계교란종 등을 함께 표기한다.

7) 어류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중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 범위

면적사업과 선형사업 모두 동일하게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상·하류 100m 범위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조사 시기

장마시기를 전후하여 수체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택하여 2회 이상 반복 조사를 실시한다. 4월~6월, 9월~10월에 조사를 실시한다. 단, 조사자가 상기 조사시기에 해 당하지 않는 조사시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자는 조사대상지 현황을 토 대로 해당 조사시기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조사 내용

어류상(서식종, 개체수, 상대풍부도, 우점종/아우점종, 출현시기, 출현지점 등), 군 집분석,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 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마) 조사 방법

수환경과 어류의 서식상태를 육안 관찰하며, 현장에서 동정이 불가능한 중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거나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동정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은 서식현황 등을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자세하게 기록한다.

(1) 하천

족대(망목 5x5mm), 투망(7x7mm), 필요에 따라 유인망, 뜰채, 낚시, 일각망 등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모든 조사는 정성조사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정량화한다.

유폭 3m 이하 : 쪽대 30분 이내, 투망 0~5회

유폭 3~5m : 쪽대 30~40분, 투망 5~10회

유폭 5m 이상 : 쪽대 40분 이상, 투망 10회 이상

(2) 호수

수변에서 쪽대·투망 사용, 필요에 따라 정치망(망목 5mm, 높이 2m, 날개길이 20m), 자망(12절, 4~5절), 낚시, 유인망 등 사용한다. 정치망은 최소 48시간 정치후 수거, 자망은 24시간 후 수거한다.

바) 주요 어류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1) 꼬치동자개(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쪽대·투망 사용, 야행성이므로 18~20시 사이에 채집해야 효과적이며 주간에는 채집이 어렵다.

(2) 미호종개(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모래 속에 주로 은신해 있으므로 족대를 사용, 모래를 파헤치며 채집한다.

(3) 여울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쪽대·투망 사용, 산란기 혼인색 외에는 돌마자와 구별이 어려우므로 산란기 혼인색이 나타난 시기인 4~5월에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외 입의 구조로 동정 가능하다.

(4) 임실납자루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봄(4~5월) 조사 실시, 족대·투망·유인망 사용, 칼납자루와 외형적으로 구별이 어려우며 산란기에 복부를 압박하여 배출되는 알의 모양으로 구별한다.

(5)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족대·투망 사용, 모래 여울에 서식하며 모래 속에 잘 은 신하므로 모래를 파헤치며 채집한다.

(6) 가시고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쪽대·투망 사용, 1년생 어류로 4~5월 산란 후 성체는 대부분 죽는다. 5~6월경에는 성체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하므로 가는 망목의 뜰채를 사용하여 치어를 함께 채집해야 한다.

(7) 꾸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쪽대·투망 사용, 큰 돌이나 자갈층이 발달한 유속이 빠른 여울에서 채집한다.

(8) 다묵장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쪽대 사용, 대부분의 시기를 사저질에 파묻혀 유생상태로 지내므로, 하상을 파헤치면서 채집한다. 9~10월에 변태하며 3~4월에 산란 후죽는다.

(9) 돌상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쪽대·투망 사용, 큰 돌이나 자갈층이 발달한 유속이 빠른 여울에서 채집한다.

(10) 좀수수치(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쪽대 사용, 개체가 작고 몸이 가늘어 2x2mm의 망목이 작은 쪽대를 사용한다.

(11) 칠성장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봄·여름·가을 조사 실시, 쪽대 사용, 대부분의 시기를 사저질에 파묻혀 유생상태로 지내므로, 하상을 파헤치면서 채집한다. 가을~겨울 사이에 변태하며 봄에 바다로 이동하고, 성체는 산란을 위해 5~6월에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온다.

사) 조사 결과의 정리

어류 목록의 정리는 법정보호종, 외래종, 생태계교란종 등을 함께 표기한다.

8)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 범위

면적사업과 선형사업 모두 동일하게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상·하류 100m 범위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조사 시기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어류와 동일 지점, 동일 시기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홍수기 전·후 총 2회 조사를 실시하며 4월~5월, 9월~10월에 조사시기를 선정한다. 단, 조사자가 상기 조사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시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자는 조사대상지 현황을 토대로 해당 조사시기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조사 내용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상(서식종, 개체수, 상대풍부도, 우점종/아우점종, 출현시기, 출현지점 등), 군집분석,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마) 조사 방법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어류와 동일 지점, 동일 시기에 조사를 실시한다. 하상의 구조와 유속 등을 고려하여 Surber sampler(30cm×30cm, 망목: 0.5mm)로 3회씩 정량채집을 실시하고, 보조적으로 Hand-net, D-frame net 등(망목: 1mm 이하)을 이용하여 정성조사를 수행한다. 단위면적당 출현 개체수(inds./m², 이하 개체수)를 산출하여각 종이 출현한 총 조사 단위에서 개체수를 산정 후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군집분석은 우점도, 다양도, 종풍부도, 균등도를 실시한다. 생물학적 수질평가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점수(ESB: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kong 1997, kong et al. 2018)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은 서식현황 등을 현지조사표의 특이사항에 자세하게 기록한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군집분석 방법

구 분	군집분석 방법
우점도(DI)	DI = N1 + N2 / N
Dominance Index (McNaughton,	주) DI : 우점도지수, N : 총 개체수, N1,N2 : 제 1,2우점종
1967)	개체수
다양도(H') Diversity Index (Shannon-Weaver, 1949)	H' = - ∑ (Ni / N·log2Ni / N) 주) H': 다양도, S: 총 종수, N: 총 개체수, Ni: i종의 개체수)
종풍부도(R1)	R1 = (S-1) / In(N)
Richness Index (Margalef, 1958)	주) R1 : 풍부도, S : 전체 종수, N : 총 개체수
균등도(J')	J' = H' / log2S
Evenness Index (Pielou, 1975)	주) J': 균등도, H': 다양도, S : 전체 종수

- 주) 1. McNaughton, S.J. 1967. Relationship among functional properties of California Grassland. Nature 216:168-169.
 - Shannon, C.E. and W. Weaver. 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pp. 117.
 - 3. Margalef, R. 1958. Information theory in ecology. Gen. Stst. 3:36-71.
 - 4. Pielou, E.C. 1975. Ecological diversity. John Wiley & Sons. New York.

바) 주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시 고려사항

(1) 귀이빨대칭이(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서식지 주요 유형 : 강이나 호수의 수심이 약간 깊은 곳

분포 :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

출현시기: 연중(동절기 조사 어려움)

조사방법: 육안관찰, 드레지(dredge) 및 스쿠버다이빙(scuba diving)

(2) 두드럭조개(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서식지 주요 유형 : 평지하천의 하상이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곳

분포 : 한강, 금강 및 섬진강 일대 국지적으로 분포

출현시기 : 연중(동절기 조사 어려움)

조사방법 : 육안관찰, 계류형채집망(Surber sampler) 및 스노클링(snorkeling)

사) 조사 결과의 정리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목록의 정리는 법정보호종, 외래종 등을 함께 표기한다.

9)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가)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의 분 포현황과 생물학적 측정을 통한 수질 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시행시 수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 범위

부착조류에 대해서는 면적사업과 선형사업 모두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상·하류 100m 지점을 조사범위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플랑크톤은 사업대상지 내에 호소가 존재할 경우에 실시한다. 영양염류, 부유물질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통과하거나 영향을 받는 하천 상·하류쪽으로 500m 이상까지를 조사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 조사 시기

담수에서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가 번성하는 시기인 2월에서 11월 기간 중 봄(2월~4월), 번성기(5월~9월), 가을(10월~11월)로 나누어 조사한다. 특히 번성 시기에 출현종의 급격한 변화나 일부종의 급격한 생물량 증가가 관찰될 우려가 있는 경우5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조사한다. 단, 조사자가 상기 조사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시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자는 조사대상지 현황을 토대로 해당 조사시기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조사 내용

플랑크톤(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 각 분류군별 기재) 및 부착조류의 생물상, 출현량, 다양성과 균등도와 같은 생태학적 정보 기재,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생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하천 및 호수 수계의 생태안정성과 오탁지수의 비교를 위한 DAIpo지수(하천)와 TDI지수(호소)를 조사한다. 녹조현상 발생 유발 생물의 출현여부 및 생물량을 기재한다.

마) 조사 결과의 정리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의 목록을 정리한다. 군집분석은 우점도, 다양도, 종풍부도, 균등도를 실시한다.

[별표 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제16조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1.	계획의 목적	가. 계획의 목적	○ 계획의 목적·목표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및 개요	나.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추진 근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거, 계획의 확정·
			결정·승인기관명을 제시한다.
			○ 계획의 규모와 입지, 계획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되
			구상 단계에서 명확한 입지나 소요 부지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제시한다.
2.	대상지역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설정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구체적인 입지가 없는 계획의 경우에는 계획으로 인한 영향의
			시간·공간적 범위를 개괄적이고 정성적인 형태로 파악하여
			제시한다.
3.	토지이용		○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의 축척
L	구상안		1:3,000 내지 1:25,000도에 토지이용 구상안을 제시한다.
4.	지역개황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5.	대안의 설정		○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한다.
6.	평가항목 및	가. 평가항목 설정	○ 영 별표 l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
	범위 등의		부평가항목'중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설정		선정 사유 및 제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범위 및	○ 평가 항목별로 평가 범위 및 방법 등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방법 설정	제시한다.
7.	주민 등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대한 의견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개발기본계획만
	수렴계획		해당한다)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
			수막 등)를 활용한 의견수렴 계획을 추가 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제23조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l. 요약문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 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2. 정책계획	가. 계획의 배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개발기본계	및 목적	
획)의 개요	나. 전략환경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
	영향평가	기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한다.
	실시 근거 등	
3. 정책계획		○ 정책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개발기본계획)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
대안 및		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정책
입지 대안		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하여 검토한다.
		○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
		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
		지역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4. 전략환경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영향평가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
대상지역		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
		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지역 개황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6. 환경영향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평가협의회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심의내용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
		게 기재한다.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21 N-2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법제처		56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7. 전략환경 영향평가항 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8.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다음 표에 의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평가항목 등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 한다. 평가항목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검토 내용 및 쪽 결과 결과
내용 9.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개발기본계 확만 해당)	가. 주민의견 수렴 개요 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사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분 평가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반영 여부 역 영목 (기관) 초안 설명회 공청회
10. 계획의 적정성 법제처	가. 정책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 정책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를 제시한다.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제시한다. ○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나) 국제환경 동향·협 약·규범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 는지 제시한다.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계획 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지 제시한다.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제시한다.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수요·공 급 규모의 적정성	○ 인구의 증가, 자원 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 시 환경 용량 및 환경 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제회 등)이 하다보기라이 조소가 가능하기 제시하다.
법제처	나. 개발기본 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지 제시한다.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58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2)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류 선정 방법 계획을 수림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생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림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 급 선정 기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지 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 서 기 및 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11. 입지의 타당성(정책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 성은 없는지 제시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 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한다.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법제처	3)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4) 수환경의 보전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룡지 등의 외부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 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 다.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 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 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 지 제시한다.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 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3. 부록	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 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한다.
법제처	나.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참여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한다.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60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사람의 인적사항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다. 전략환경 영향 평가 대행계 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법제처 61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5]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제26조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나. 사업내용 1) 명칭 2) 위치 (소재지) 3) 사업시행자 4) 사업내용	 ○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사업지역의 위치도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면적・계획인구・노선 길이 등),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한다.
2. 환경영향 평가대상 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등에 사용할 기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선정한 사유를 제시한다.
3. 토지이용 계획안(환경 보전방안의 대안)		 ○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가급적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조감도 등을 함께 제시한다. ○ 사업지역 위치, 사업 규모, 사업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의 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역개황		 ○ 대상지역의 환경현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다.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현황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공장・공항・도로・철도・발전시설・항만・산업단지 등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취・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반대 기능성인 있는 기설
법제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어업권 현 ⁶ 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쪄 ^{객법령[점점} 행시)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기타 사업지역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5.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 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 및 사업 준공 이후 전 단 계에 걸쳐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 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영향요소를 추출한다. ○ 이때, 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의 선정사유를 중점, 일반, 미포함으로 구분하여 제 시한다.
	나. 환경영향 요소와 평가 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한다. ○ 이때,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다. 항목별 평가 범위의 설정	○ 평가 항목별로 평가범위 및 방법 등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6.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역부		○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및 그 이유
7.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평가서 초안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 수막 등)를 활용한 의견수렴 계획을 추가 제시할 수 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 향평가 협의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33조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I . 요약문	1. 사업의 내용	○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2.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3. 환경영향	○ 환경현황·영향예측·저감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
	저감방안	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	
	조사계획	
	5. 대안	○ 사업지역 위치, 사업 규모, 사업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의 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6. 결론	
Ⅱ.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및 목적	
	_	○ 영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 시기
	실시 근거 등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의제되는 사업 등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이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인허가 내용(근거
		법, 규모 등)을 모두 기재한다.
TIT #0 773 43 73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및 평가서 작성 비용을 기재한다.
Ⅲ. 환경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평가대상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등에
지역의 설정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
		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IV. 지역개황		○ 대상지역의 환경현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
		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
		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
		생물 보호구역 등),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
		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
법제처		유발시설활 국가법령정보센터
		11 6 1 6 6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V. 평가항목· 범위 등의 심의결과	 평가항목·범 위 등의 개 요 	 취수장・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 초시설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사업지역 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기타 사업지역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공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평가항목・범위 결정 요청부터 결정내용 통보까지의 추진 경위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등)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
	2. 평가항목·범 위 등의 심 의 결과	경우 그 결정 내용을 아래에 따라 작성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내역(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을 기재한다.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 및 사업 준공 이후 전 단계에 걸쳐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중요한 영향을 추출한다.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그 사유를 다음 표에의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법제처		분야 항목 결정결과 사유 * 분야란은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으로 하고, 항목란은 영 별표 1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하 며, 결정 결과란은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으로 구분하되 사유 란에 결정사유를 기재한다.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계획 등의 범위ㆍ방법의 선정 및 그 사유 등을 다음 표에 따라 요약하여 기재한다. 평가 경쟁 결과 선정사유 기재한다 및 경쟁 결과 선정사유 기재한다 및 경쟁 결과 선정사유 기재한다 및 기준 기준 기준 비서 심의결과 약식평가절차 대상 및 의견 수렴 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수렴 대체 결정 폭환합영정결제된 내용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2 2 1 1 6	및 사유 등을 기재한다.			
VI. 주민 붕	l. 주민의견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			
11. 구권 등 의견수렴	1. 구인기선 수렴개요	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1-2-1 B	1 8/1175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 항임(발생의 및 항상되를 걸시한 경구 의를 모임기생고 및 일시를 기재한다.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평가준비서 심의에 따라 의견 수렴을 대체한 경우 전략환경			
		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를 아래에 따라			
		기재한다.			
		,			
	2. 주민의견	○ 아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한다.			
	수렴결과	구분 평가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 쪽			
		명가서초안공람 설명회			
		공첩회			
		▲ 평가항목을 구분하기 곤란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타로 구분한다.			
		▲ 위 서식의 '쪽'란에는 평가서의 해당 쪽(페이지)을 기재한다.			
		○ 관할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서초안 공람결			
		과 통지서사본을 제시한다.			
		○ 설명회개최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제시한다.			
		○ 공청회개최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시한다.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제시한다.			
Ⅶ. 환경현황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환경현황, 영향예측 등의 결			
조사,		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상호 연계된 저감방안 및			
예측·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저감		○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및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			
방안 및		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중요 이슈가 되는 사항을 특히 고려하			
사후환경영		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서 다른 항목의 평			
향조사		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			
		지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1) 현황조사			
		- · · · · · · · · · · · · · · · · · · ·			
		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			
		히 사용한다.			
법제처		○ 사업시행에66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 협형정 관정을 두어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개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2) 예측영항 및 평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도 기술하도록 한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저감방안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 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설정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영향
법제처		요소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 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지정된 중요지(구)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 근지역에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 감대책을6수립·제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각 항목별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환경영향조사지점, 방법, 횟수 등을 정하여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 중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과정에 사전 예측된 결과와 주기적으로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조사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 등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의 초과 시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및 영향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1.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 상 (1) 현황 (가) 조사항목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식물과 생태계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분류군별 현황과 생태환경, 보호가치가 있는 주요종이나 개체, 생태계의 자연성 등을 조사한다. ■ 식물상 - 판속식물 - 대상지역의 식물구계 및 식물군계, 식생분포 현황 ■ 육상동물상 - 포유류 - 중류 - 양서・파충류 - 육수생물상 - 어류 -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 플랑크론 및 부착조류(필요시 조사)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 광역생태계 현황, 생태계다양성, 생물서식지 현황 및 특성,
법제처	(나) 조사범위	서식지다양성, 식생패치의 분포, 서식지간 연결성 ■ 기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 ○ 조사의 공견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법域域보관력의 동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४ न	71411185	작 성 방 법 •식물과 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7	(다) 조사방법	있는 범위로 한다. - 조사범위는 동・식물의 분포와 서식・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영향이 예상되는 곳을 포함한다. - 문헌조사에 의해 주요종 서식이 이미 확인된 지역이 인근에 포함될 경우 기본조사범위 외에 확장하여 조사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조사횟수)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포함한다. - 조사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위치한				
		읍·면·동으로 하되, 이동성이 강한 포유류와 조류의 경우 해당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까지를 포함한다.				
		애중 급현중과 현집 급현중까지를 포함한다. <표> 분류군별로 최소한 참조해야할 문헌 목록				
		대분류 소분류 학술지/보고서 이름 비고				
		식물상 <mark>식물 한국식물분류학회지 www.pltaxa.or.kr</mark>				
		한국동물분류학회지 www.kssz.or.kr				
		포유류 야생동물 개체군의 국림생물				
		생태학적 특성 연구 자원관 한국조류(鳥類)학회지 www.osk.jams.re.kr				
		'99-'N4녀 경운청 조류				

법제처

동사센서스 국림환경과학원 조류 국림생물자원관 (鳥類)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2005~) 동물상 species.nibr.go.kr/bird 철새이동경로 및 이동성 국림생물자원관 조류 보호관리방안 연구 양서 한국양서파충류학회지 www.krsh.co.kr 파충류 곤충류 한국곤충학회지 www.korentsoc.org 한국어류학회지 wwस्मिष्ठब्रम्भाभा 어류 및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육수	한국하천호수학회지	www.ksl.or.kr
			생물	한국수산과학회지	www.kofis.or.kr
			조류 (藻類)	한국조류(藻類)학회지	www.algae.or.kr
			주요종	한국생태학회지	www.ecosk.org
		생태계	의	한국습지학회지	www.kwetland.or.kr
			서식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www.enveco.org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보고서	환경부
				전국 해안사구, 하구역	환경부
				조사보고서	287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보고서	환경부
				포고시 전국 무인도서	
		공통		고 · · · · · · · · · · · · · · · · · · ·	환경부
		ਠਠ 		습지보호지역정밀조사	환경부
				보고서	
				국림공원자원모니터링 보고서	국림공원 관리공단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보고서	문화재점
				한국생물상연구지	한국자연보전협회
				한국자연보존연구지	한국자연보전협회
	(라) 조사결과	출현시기, 출현위치기, 개체수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탐문 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 시확인하여야 한다. - 탐문조사대상자는 1) 사업예정지역 내와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2) 지역생태 전문가 또는 지역 대학의 생물(생태)관련 교수 및 연구원, 3) 지역 행정기관의 담당자 또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생물교사, 수렵 허가를 받은 자, 민간단체(환경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탐문 가능한 대상자 중 3인 이상으로 정한다. 탐문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직업, 연락처 등) 및 구체적인 탐문내용은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관하여 협의기관 등에서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탐문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평가서에 표기되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함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 조사지점별로 동・식물상과 생태계의 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표나 그림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 탐문조사 결과는 탐문조사개요, 탐문조사내용, 탐문조사결과 조치 내역 순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탐문조사내용			
법제처				· : 조사횟차별로 조사일, 팀 출현위치, 출현개체수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출현종 : 법정보호종(열종위기 야생생물 Ⅰ・Ⅱ급, CITES종), 지역고유종, 특이종, 집단서식종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 위주로 조사 - 조사결론 : 탐문조사결과, 현지조사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 탐문조사결과 조치 내역 - 탐문조사결과 현지조사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예측항목은 대상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의 동・식물과 생태계에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조사항목으로
	(나) 범위	지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사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확대하며, 직·간접 영향을 범위설정에 반영한다. ④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운영 시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다) 방법 (라) 예측결과	 ○ 예측방법은 영향(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한다. ○ 예측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정리한다. - 식물상의 경우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등의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육상동물상의 경우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등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육수생물상의 경우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등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각 생물군별로 사업시행으로 도태가 예상되는 종과 새로유입이 예상되는 종을 비교・정리한다. - 생태계의 경우 서식지와 서식환경의 변화, 식생패치 별 변화, 동물이동통로와 생태계의 연결성 등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되는 변화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법제처	(마) 평가 (3) 저감방안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과 중요성(가치)을 고려하여 영향이 심각한 정도, 사후 회복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 영향예측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호해야할 동・식물과 생태계에 대해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사업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사업계획 조정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취업하정또한티보상할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4) 사후환경 영향조사	수 있는 저감방안을 최대한 반영한다. - 저감방안의 실시로 인한 저감효과를 예상하거나 저감목표를 제시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공사 시 및 운영 시 동·식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세운다.
	나. 자연환경 자산 (1) 현황 (가) 조사항목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등 법령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등을 말한다.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기존자료 수집 및 다른 평가항목의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나) 범위	 ○ 예측항목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별표1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하되, 대상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다) 방법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는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 예측방법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원인을 파악하고
	(라) 예측결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 예측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정리한다 자연환경자산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시설물 등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또는 시설물 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한다.
법제처		- 자연환경자산이 동·식물 등인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각의 생태적 특성별 서식지 또는 생태계 단절 등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를 제시한다. 72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자연환경자산의
		중요성(가치)을 고려한 영향의 정도, 회복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요소별 저감방안을 수립
		한다.
	(4) 사후환경	○ 해당 사업의 시행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영향조사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1) 현황	
	(가)조사항목	○ 아래 사항 및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기온, 풍향·풍속, 습도
		- 강수량, 일사량, 적설량, 운량
	(나) 조사범위	- 대기안정도, 대기혼합고(상층기상을 측정할 경우)○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이 위치한 지역과 사업지역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상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관
		할지역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의 기상 특성 및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10년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 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계절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을 측정한 경우 기상 인자별 시계열 분
		석 및 계절별 혼합고를 그림 및 표로 정리하고 서술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지형적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의 사업시행으로 인
	(11) HIO	한 국지기상 및 기상특성 변화 등으로 설정한다. ○ 세측범인는 사업그리 기행성 변화 및 무기사용 변화를 구워된었
	(나) 범위	○ 예측범위는 사업규모, 지형적 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여 성거하다
	(다) 방법	설정한다. ○ 문헌조사, 유사사례 조사, 이론식, 기상장 모델링 등의 방법을
	(라) 예측결과	이용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상(온도, 풍향·풍속, 습도 등)변화 정도를
		기술한다.
		○ 기상변화가 해당 사업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기
		술한다.
법제처	(마) 평가	○ 기상변화가 ₇ 해당 사업 및 주변 지역에 미치국 _가 법용황고전투를 문

(3) 저간방안 이 병자리파를 토대로 지역의 환경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변화가 크게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저간방안을 수립한다. (4) 사후환경 이 가상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거나, 영향예측의 불확실성 이 큰 경우 사업으로 인한 기상변화를 조사하고 필요 시 추가대 책을 수립한다. 나. 대기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4) 사후환경 영향조사 ○ 기상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거나, 영향예측의 불확실성 이 큰 경우 사업으로 인한 기상변화를 조사하고 필요 시 추가대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 대기절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영향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 배출하용기군, 최격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송량관리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준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변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의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군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작성기준 및 목표기군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 기상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거나, 영향예측의 불확실성 이 큰 경우 사업으로 인한 기상변화를 조사하고 필요 시 추가대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대기절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영향예상지역의 오업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군, 최격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약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총량관리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꾼을 따른다.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간 및 목표기군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크게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영향조사 이 큰 정우 사업으로 인한 기상변화를 조사하고 필요 시 추가대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대기절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영향예상지역의 오업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준, 최적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약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총량관리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다) 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환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 (라) 조사검기준 을 따른다.			○ 저감방안 수립 후의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 # # # # # # # # # # # # # # # #		(4) 사후환경	○ 기상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거나, 영향예측의 불확실성
나. 대기절 (1) 현황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영향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준, 최적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약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동도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동도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등도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사건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다) 조사방법 (다) 조사방법 (다) 조사방법 (다) 조사방법 (자기절 현황 조사는 기준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한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하되고 사료 생각할 수 있다. (한지조사는 생각 생각할 수 있다. (한지조사는 생각 사용 기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한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간) 소사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영향조사	이 큰 경우 사업으로 인한 기상변화를 조사하고 필요 시 추가대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영향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준, 최적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총량관리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준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설정한다.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조사지절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영향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준, 최적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약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총량관리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준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설정한다.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변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나. 대기질	
고려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영향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군, 최적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나) 조심 전쟁 (나) 조심		(1) 현황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영향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군, 최적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와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대) 조사범위 (대) 조사 현재조사를 병행한다. (한) 조사범과 (대) 전환경 조사는 기준 자료 조사와 현재조사를 병행한다. (한) 조사권과 (라) 조사리 해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군을 따른다. (라) 조사권과 (라) 조사리 행봉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군과의 격합성을 기술한다.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 영향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군, 최적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충량관리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고려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준, 최적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 판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총량관리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행,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다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다. ○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을 따른다.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기환경개선에 판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별표 1.4 참조)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총량관리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판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행,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 영향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 대기환경기군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총량관리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시설 등의 현황(배출허용기준, 최적방지지설 현황: 「수도권대
 대기오염총량관리현황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대기환경기준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공간책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시간책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준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대기환경기군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
* ** ** ** ** ** ** ** ** ** ** ** ** *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지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다) 조사방법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한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한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라) 조사결과 (라) 조사기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설정한다.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다) 조사방법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을 따른다.
(2) 사업시행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	
\cdot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현황조사 항목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대기질에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현황조사 항목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한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한다.
(나) 범위 ○ 영향 예측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를 준용한다.		(나) 범위	○ 영향 예측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를 준용한다.
마네티 : 이 시간전 변화는 고사 사이 으여 치르 구브라다. 이 여모기 바	법제처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합성정보열물질 발
· 마세지 : [/ /기시[편 현생대] '중으로 기를 하는 게 가는 그 ##################################	급세서		

ŧ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다) 방법	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여 사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대기확산모델링을 수행하고 사업지역 내·외 영향예상시설 및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현황치를 배경농도로 하고 대상사업의 실시에 따른 기여도를 가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대기오염물질별로 최대착지지점 및 농도, 평가기준(환경기준 및 목표기준 등)의 기준시간(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의 예측농도를 표로 작성하여 평가기준과 비교・기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역)환경기준과의 비교, 현황농도 대비 증가 비율(%)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 영향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 획을 수립한다.
		다. 악취	
		(1) 현황	
		(가) 조사항목	○ 사업지역 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확인하고, 악취배출시설이 있을 경우 악취발생원, 악취물질, 악취 강도(희석배수) 등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시간적 범위는 악취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악취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를 위주로 하되 사업지역 내·외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이 존재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경우 현지 조사를 수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조사된 악취 현황을 기술하고, 표 등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물질농도 또는 복합 악취농도 등으로 한다.
			○ 기존의 악취배출시설의 악취가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 한다.
	법제처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 내·외 지역의 지형적 현황 등을 고려 하여 악취물5질이 확산될 수 있는 범위로 한라 [™] 법 ^{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하고 악취발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 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약취 및 약취물질의 종류와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확산모델링 등을 수행하고 사업지역 내·외 영향예상시설 및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라) 예측결과	○ 기존 유사사례가 있을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한다. ○ 예측된 내용별로 결과치를 알기 쉽게 정리·기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의 비교·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취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으로 인한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의 악취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 영향조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취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 획을 수립한다.
	라. 온실가스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저장·흡수·감축 대책 등을 말한다)의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발전·이용시설 등에서의 온실가스 발생과 산림, 녹지 등의 저장·흡수,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한 감
	(나) 범위	축·저감 효과 등에 따른 발생량을 예측한다.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방법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예측한다.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환경부 고시), IPCC(기후변.
법제처		화에 관한 ⁷ 엉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 등의 ^국 관련정보센터및 유사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사례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한다.
		- 온실가스 발생량과 저장·흡수·감축량은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제
		시하되, 배출·흡수원 단위가 없어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온실가스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발생량과 저장·흡수·감축량
		등을 산정한 후 실제 배출량을 산정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된 내용별로 결과치를 알기 쉽게 정리·기술한다.
	(마) 평가	○ 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해당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감축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하되,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3) 저감방안	○ 환겨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
		적으로 수립·제시한다.
		○ 식생 양호지역 원형보전, 녹지의 조성 등 흡수원 확대를 수립·
		제시한다.
		○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4) 사후환경	수립·제시한다.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및
	영향조사	저감효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
	0 0 22 1	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3. 수환경분야	25 2 1/11 1
	가. 수질	
	(지표・지	
	하)	
	(1) 현황	○ 조사 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지표수, 지하수의 특성
	(가) 조사항목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아래 사항을 참고한다.
		- 수질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 하천, 호소, 지하수 수질
		- 지하수 이용 현황
		- 수문현황
		- 수자원 이용 상황
		-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 우수 유로 현황
		- 수질오염 총량관리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의 집수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
		업의 종류, 규모 및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하천의 유황을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수역
법제처		의 특성을 꼬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다) 조사방법	○ 수질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최소 2시기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사지점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지점별로 각 조사항목의 내용을 수역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지역 환경기준 등과 함께 정리·기술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설정한다.
		- 대상수역에 미치는 수질오염도의 변화
		- 대상수역의 유황변화(유속, 유량, 수위 등)
		- 수역이용상황 변화
		- 지하수 환경변화
		- 수자원 이용 상황, 재이용수 활용 방안
		- 사업지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
		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예측항목별로 정리·기술한
		다.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발생량 및 농도
		- 대상수역의 수질 변화
		- 지하수 환경 변화
		- 수자워 이용 상황에 대한 영향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성 등
	(마) 평가	○ 영향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기준과의 비교, 현황농도대비
		증가량(%)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자원
		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기준 및 관련수역과 기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 저
		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수질 및 수자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한다.
법제처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 28로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의 적광 법령행보 해부를 확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영향조사	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수리・수	
	문 (1) 현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가) 조사항목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수문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하천의 특성
		- 호소 및 저수지 특성
		- 우수 유로 현황
		- 수문관측자료
		- 하천시설물 현황 - 지하수로 인한 수리·수분 영향
	(나) 조사범위	
		받는 수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지역의 지형·지질특성, 유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절적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 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기술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한다. - 대상수역의 유황 변화(유속, 유량, 수위 등)
		- 내장구역의 규정 면와(규족, 규정, 구취 중) - 개발 전·중·후의 우수유출량 변화
		- 홍수량에 따른 홍수위 변화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로 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
		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로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고 운영 시의 경우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방법	○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
		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대상수역의 유황 변화, 우수유출량 변화, 홍수위 변화 등의 예 측결과를 기술하고, 수치, 도면 등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유지유량,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
23.31-3		한 오염할당부하량 등 수계의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법제처		79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3) 저감방안	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영향을 평가한다. ○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리·수문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
	(0) 시1 8 6	도록 우수배제계획, 수로차단 대책, 하천이설 대책 수립 등음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음
		평가한다.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분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
	영향조사	○ 사업 시청으로 한번 무대 무단 항상 및 사용대적 학생 시청 기 부 등음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0 0 2 1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리 케이터 개	— 1711-12 1 GC 11
	다. 해양환경 (1) 현황	
	(1) 현행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V1/ ±104	반영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음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해양 동·식물상(부유·저서 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을 포
		함)
		- 해양수질
		- 해양저질
		- 해양물리
		- 어업권 등 해역 이용 현황
	(나) 조사범위	 해양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등 규제지역 및 규제내용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까지로 설정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해양환경의 계절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	○ 해양환경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각 조사항목별 해양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동 자료를 활용한다.
		○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
		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법제처	1	- 해양 동·식물상(부유·저서 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을 포함)변 80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화
		- 서식처 환경 변화
		- 해양 수질·저질 변화
		- 해양물리 변화(침·퇴적 양상 변화 등)
	(-1) 2101	- 해이용 현상황 변화 등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준용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정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오염물질
		발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3) 200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
		분석,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등을 이용하여 영향을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양수질 변화,
		해양동·식물상 변화 등 해양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
		립한다.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해양환경과 어업권 등 해역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에
		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영향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
		- 토지이용 규제 여부
		- 사업지역에 대한 입지 및 개발규모 규제 여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의
		현황 및 계획
법제처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눈 토지이용에 변화가 예상되는 자유법광쥶(현례역으로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토지이용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2) 사업시행	나타낸다.
	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아래와 같은 항목을 예측항목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토지이용 계획 - 시설물 배치 계획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나) 범위	 - 공원, 녹지 조성계획, 생태면적 확보계획 등 ○ 예측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문헌을 조사·분석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거나
	(라) 예측결과	지리정보체계 등을 활용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타 평가항목에서 예측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또는 시설물 배치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4) 사후환경 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역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토양 (1) 현황	
	_	○ 조사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 물질을 고려한 토양오염 개연성, 배경농도, 오염현황 및 토양의 특성과 오염가능물질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조사범위	○ 사업으로 인해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다.
법제처	(다) 조사방법	○ 토양오염 갱연성조사는 주로 기존자료조사 및 형지(탈문)조사 국가법형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라) 조사결과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등으로 실시한다.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토양현황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항목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어 사업지역 내·외 지역의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으로 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나)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는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사업시행 전·후의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농도, 토양오염원의 특성, 토양 특성 및 지하수 유동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사 평가 사례를 참조하거나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모델, 실험 등의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각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으로 제시한다.
법제처	(마) 평가	○ 예측결과를 ⁸³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사업자 ^{역법렛정} 坪엔된지역의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아울러 토양오염원이 지표수 및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양오염원에 의한 지표·지하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의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 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지형·지 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한다.
		 지형형상(표고, 경사도, 산출기 등) 지질 및 토양상황 지질유산 및 특이 지형·지질(동굴, 매립지, 습지, 연안, 해안, 침식지, 사구 등) 광물자원(광산 및 광구 등) 현황 지질재해 이력(산사태 등)
	(나) 조사범위	 지형적 장애물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지형적 요소와 지질 특성, 지하수,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조사항목의 시간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하되 지형・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나타낸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지형·지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범위	○ 예측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
법제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지형·지
		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 예측결과	
	(1)	정리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훼손 정도, 현 지형 대비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훼손, 토양교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영향 등 예측된 항목들 과 이들을 종합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및 기타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 저감방안의 실시로 인한 저감효과를 명시하여 적정수준의
		환경친화성 지표 및 계획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지형·지질 변화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최대한 회피가 가능한지, 대규모의 훼손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 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발생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폐기물 처리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나) 조사범위	 폐기물 처리계획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범위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폐기물 발생량, 처리현황 등의 시간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	
법제처	으로 인한	85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양, 처리방법, 처리로 인한 영향 등으로 한다.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그 범위를
	(다) 방법	조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 발생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특성, 발생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원단위를 적용하거나 유사사례를
	(라) 예측결과 (마) 평가	참고하여 예측한다.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수집·운반·보판 등에 대한 대책, 재활용 및 자원화 등의 정부 폐기물 처리정책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친환경적 자원순환 영향을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평가한다. ○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기준 또는 목표기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소음·진 통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소음・진동발생원 분포현황(장래계획 포함) 정온시설 분포현황 대상지역 주변 개발계획 현황(사업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대상지역 소음・진동관련 환경목표 기준 소음・진동도 현황(현황측정)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까지를 범위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소음·진동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조사는 기존조사자료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조사결과는 조사지점별,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법제처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86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모든 소음·진동이
	(나) 범위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다. ○ 공간적 범위는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소음·진동 발생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사업의 종류, 공사의 종류 및 소음·진동발생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측식, 적정모델을 사용하거나
	(라) 예측결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 예측결과는 영향예측지점별, 공종별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정리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기준 등과 비교·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을 평가
	(3) 저감방안	한다.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4) 사후환경 영향조사	○ 저감방안 수립 후의 소음·진동 영향을 평가한다.○ 해당 사업의 시행이 각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및 저감대책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
	다. 위락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사업지역 내·외 지역의 위락·여가와 관련 있는 사항들로 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라) 조사결과 (2) 사업시행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락·여가시설 및 사업지역 내 위락·여가시설에 대한 배려 등으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영향이 최대인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시점을 포함한다.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규모, 특성, 대상지역의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위락·여가시설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
법제처		다. 87 국가법령정보센터

		1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위락·여가
		시설의 이용 빈도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지역의 위락・여
		가시설 설치에 대한 배려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	○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락·여가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영향조사	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경관	
	(1) 현황	
	(가) 조사항목	
		대상지 및 주변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
		도록 조사한다.
		- 자연경관자원 : 사업부지 내의 주요 지형(표고 등), 산림경
		관자원, 생태경관자원, 수경관자원
		- 인문경관자원 : 사업부지 내의 문화재 및 그 밖에 보존할 가
		치가 있는 지역 유적
		- 조망경관자원 : 해당지역 고유 스카이라인, 사업부지 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보여지는 산지, 구릉지 등의 주요 자연경
		관자원, 랜드마크, 주요 도로
		- 대상지역의 적용을 받는 경관계획 및 지침, 경관조례, 경관
		가이드라인 등 조사
		- 해당 사업이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
	(11) 3 (19) (1	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나) 조사범위	
		경관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을 현황조사의 범위로 한다. 1)
		대상지 주변에서 부지가 보이는 범위, 2) 사업부지에서 외부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범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현황조사의
	(4) = 1019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 조사지점별로 표나 그림, 사진 등을
	() <u> </u>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 ,
	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설정한다.
		- 훼손여부 : 자연경관자원(산림경관, 수경관, 생태경관 등), 인문
		경관자원(역사문화경관, 도시경계경관, 건축경관 등), 조망경관
		자원(생태녹지, 하천, 연안 등 경관축, 자연 및 도시 스카이라인,
법제처		8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랜드	.마크 등) ·	등 경관자원유형	별 직·간접적 훼손 및 회복 여부
		- 시각	영향 : 해당	강 개발사업으로	인해 변화하는 경관과 주변 경관
	(-1) (0.0)		조화성 여		A
	(나) 범위				을 고려하여 경관영향이 미치는
					. 한다. 1) 대상지 주변에서 부
					지에서 외부 경관자원이 조망되
		는 멈	위의 누기	가지 숙면에서 '	영향예측의 범위로 설정한다.
	(다) 방법	○ 대상시	- 업 및 주	변지역의 경관적	특성과 경관적 변화를 잘 파악
		할 수	있도록 2	조감도, 사진합성	, 와이어프레임, 매핑 등의 시뮬
		레이스	년 기법을	활용한다.	
	(라) 예측결과	○ 경관ス	나원에 대현	반 직접적 훼손 ⁽	여부, 조망 차폐, 시각적 접근성,
		개방성	성, 압박감	등 간접적 훼손여	겨부와 새로운 경관형성으로 인한
		조화성	성 여부 등	시각 영향의 예	측 결과를 기술한다.
	(마) 평가	○ 평가는	- 영향을 부	받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음 표에서 제시한
		경관형	}목별 평기	시 고려 사항을	· 참고하여, 경관의 변화 여부 및
		정도어	에 대해 시	행하며, 정성적・7	성량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경관심	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의
		주요니	H용 및 결크	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표>경관		가 시 고려 사항	
		구분	6	당 경관	평가 시 고려 사항 · 주요 조망점에서 7부 능선 이상의 조
		스카이 라인		용지의 스카이라인	망확보 여부
				물의 스카이라인	·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랜드마크	도시적 랜드	마크(대표·상징 경관) T	· 훼손 및 조화 여부
				산지 및 구릉지	· 산지 및 구릉지 경관의 훼손 및 조화여부 · 산지 및 구릉지 지형 훼손여부
			산람녹지경관	점적 경관자원(암벽, 폭포, 고목 등)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녹지 하천, 호소, 연안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보전대책
		2250	수(연안)경 관	(해안 및 도서, 호 수 및 습지, 사구 등)	
		경관자원	생태경관	철새도래지, 야생동 식물서식처 등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농경지, 농촌마을 등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역시문화경관	문화재 및 지역유 적, 근대건축물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 문화재 등 주변 경관의 보전 및 조화
			도 시경 계 / 가로경관 등	도시경계부, 가로 경관 등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경관축	통경축, 생년 연안 경관축	태경관축, 하천 및 , 가로경관 등	· 연속적 조망의 훼손여부 및 회복 여부
		녹지경관	훼손된 녹지	축경관	· 복원/복구 여부 및 대책
			공원 및 녹기	1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89

법제처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구 분 제당 경관 평가 시 고려 사항	
		하천 및 해안의 연속성 · 연속적 조망 확보 하천의 문치 ·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
		수경관 레이도로(보해데크 문)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dashv
		스피 이 비으로 위치 및 조성방법의 적절성	$-\parallel$
		. *** *** *** *** *** *** *** *** *** *	<u></u>
		· 차폐도 및 조망확보(배치, 위치 등	
		인공경관 형성 도로 , 철도, 터널 등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주변 녹지축 연결성 · 절·성토 사면처리의 적절성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사업,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관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니	구 최
		소화, 새롭게 형성된 경관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유도	하기
		위한 조정, 경관보전대책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4) 사후환경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및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영향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마.		
	위생・공		
	중 보건		
	(1) 현황	○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항목	- 의료시설 현황	
		- 상수도, 하수도 현황	
		-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시작기업 및 조범기업이 이고 사망를 오려를 이그기다	. 11 24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집단	
		(인구추이, 연령별·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 의 분포 현황(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পাত
	(나)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과 영향이 예상되는 행정구역	으로
	(다) 조사방법	한다. ○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 ^다	쿠.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준용한다. 다만,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발생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한	간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미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분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로 한	한다.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법제처		정량적 또數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확위법형정로(제)향	
	l l		1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라) 예측결과	대상에 한함)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이레고카에 레케지노 고카크코스이(레키지 스키 사오기토)법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 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에 따른 초과발암위해도
		(발암성 물질), 위해도지수(비발암성 물질) 등 위해성 기준을
	(3) 저감방안	활용한다.(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১) প্ৰতিম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대책 수립 후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영향조사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바. 전파장해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71) 22 184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TV 등의 수신현황
		- 고압선로에 의한 자기장 노출영향정도
	(나) 조사범위	
		예상되는 범위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 등 문헌자료를 조사하거나 자기장측정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TV 등의 수신상황, 고압송전선로 경과지로부터 주
		거지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전자파에 의한 영향 정도를 정리·서술한다.
	(2) 사업시행	0 0 1 7 2 7.
	으로 인한	
	영향예측	○ 세츠워모스 크게워모스트 케이터 윈모흐 카즈스트 워크 가시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 으로 인한 전파의 차폐장해와 반사장해. 전자파의 자기장에
		의한 노출영향을 항목으로 포함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다) 방법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한다. ○ 예측방법은 이론식, 유사사례 및 예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
	(-1/ 61H	○ 에막성입는 이른데, ㅠ^^^데 및 에막으로그림을 사용하는 정 법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11 = 11 = 11 = 1		서술한다.
법제처	(마) 평가	○ 예측결과를 ⁹¹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국 간붴령정확색터미치는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영향을 그 강도, 노출정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_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영향조사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사. 일조장해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지역의 일반상황(지형상황, 토지이용상황)과 일영
		상황(범위, 시각 및 시간수 등)으로 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준공시기 기준으로 동지일의 진태양시에 의
		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사이에 일영이 발생된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조사항목은 높은 구조물 혹은 시설물(건축물 등)로 인한 일조피해
		예측을 위한 일영곡선을 대상으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에 준하되 토지이용상황, 지형상황
		등의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조장해가 미치는 지역을 범위로 한다.
	(=1) 5141	○ 시간적 범위는 철탑, 굴뚝 등 고가구조물의 건설완료 시점으로 한다.
	(다) 방법	○ 예측은 이론식 사용, 일영차트(Chart) 또는 모형실험에 의한
	(라) 예측결과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예측지점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
	(-1/ 1/4/2/1	하여 서술하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등 일영에 관한 규제기준 등
	. , , , , ,	환경보전을 위한 법령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
	_	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대책 수립 후 일조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4) 사후환경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영향조사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6. 사회·경제	
	환경분야	
	가. 인구	
	(1) 현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법제처	(가) 조사항목	지역의 환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 목 기	재사항	작 성 방 법
		- 인구 현황
		- 인구구성 현황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계층(이하 "민감계층"이라
		한다) 현황(만 13세 미만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매인 등)
(나	·) 조사범위	 ─ 인구중감 현황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 및 대상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
		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
		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 조사방법	○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라	·)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지도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7)	·) 항목	○ 예측항목은 인구변화, 인구구성의 변화, 민감계층 밀집도 등을
(11) 범위	포함한다. ○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의 영향이
(-1	ורם 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하되 인구 증가가 최대인 때를 포함한다.
(다	·)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라	·) 예측결과	○ 예측항목별로 예측된 내용을 표나 그림, 지도 등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서술한다.
(□)	·) 평가	○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2)	7) 7) 4) 0)	전반적인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사업규모 조정, 토지이용변화, 사 업내용 조정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집대통 조정 등을 포함한 시점정원을 구입한다.○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인구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
		 이 시험장인 구입 구 자입으로 인해 인기 및 인업계장에 되지는 경쟁 음 평가한다.
(4)	사후환경	글 생기된다. ○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영향조사	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
		립한다.
니 나. ·		
	현황	
(가	·) 조사항목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가구수 - 주택수
		- 구역구 - 주택보급률
		- 주택의 형태와 구조
		- 주거환경
		- 주택소유현황
법제처		93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나) 조사범위	 이주민 발생 현황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의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스 과호환교수 크게원교수를 제기된 환교수 제공수를 되지 가지스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으로 인해 변화될 주거특성과 이주단지의 설치 등 이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의 관련지
		역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인구가 최대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 상의 변화, 이외의 변화들을 종합하여 적 절한 방법으로 결과를 서술한다.
	(마) 평가	○ 사업 시행으로 인해 대상지역, 관련 있는 주변지역 및 이주단지 등에서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의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	○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영향조사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산업	○ 크기워보호 시계 기원호 교원되지 기시면 원보관환호 작 스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별 활동현황을 알 수 있는 항목들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1/ 107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
		도록 설정한다.
		- 산업구조
		- 주변 관련 산업
		- 산업진흥계획 - 산업배치
		- 산업병 생산물의 특성
	(나) 조사범위	
		대상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법제처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9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 愈 相형정보 坐한 다.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으로 인해 변화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의 인용, 해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산업별 구조변화, 소득변화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마) 평가	○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조정 등을 포함한 저
		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	○ 사업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
	영향조사	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VⅢ. 환경에	3321	○ 위 VII항의 각 항목별 (3)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
미치는		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영향의 저감		○ 위 VII항의 각 항목별 (4)에 기재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방안 및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사후환경영향		5 E
조사 (총괄)		
IX. 불가피한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
		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X. 주민의 생활		○ 환경영향평가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환경, 재산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또는 예상)
상의 환경		된 사항을 저감대책 시행전·후로 나누어 항목별로 기재한다.
오염피해		○ 환경오염피해여부 및 정도는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최도가
및 대책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 ,		기재한다.
XI. 대안설정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및 평가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2, 0.1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법제처		정량화하고 ⁹⁵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법령정본 ^센 평가기법
		00~~ 나는 기00 1 사는 기기 기기 1 0 분기단 3/1/1분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Ⅲ. 종합평가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및 결론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
		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
		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X Ⅲ.전략환경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
영향평가		평가 협의에 대한 개요(협의요청기관, 협의대상기관, 협의내용
협의 내		통보일자 등)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용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주체, 반영 여부, 반영내용,
여부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협의내용 항목별로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X IV .부록 1	. 평가대행자	○ 평가대행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등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사
		항 및 대행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 사업관련 상위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과, 국가 또는
	계획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위 계획 및
	법령	관계법령을 간략히 언급하고, 대상사업지역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또는 정책 등을 조사하여 사업별로 그 내용 및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3	. 용어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 평가서 작성	붙인다.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
	참고자료	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5	. 기타	○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 쪽을 제시하
		고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술한다.
		○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 계약 여부를 증명
		하는 서류 사본을 부록에 수록할 수 있다.
		○ 평가준비서 심의에 관한 서류 사본을 수록한다.
		○ 평가(대행)자로서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별표 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제37조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I.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를 기재한다.
II -164 -11+1		○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Ⅱ. 지역 개황		○ 별표 6 중 지역개황의 내용을 준용한다. ————————————————————————————————————
Ⅲ.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 별표 6 중 대상사업의 지역범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IV.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V. 환경 현황	1. 자연생태환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 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2. 생활환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 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3. 사회·경제환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 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VI. 입지의 타당성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별표	E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11호에 따라 작성
Ⅷ. 환경에	1. 자연생태환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미치는	(동식물상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
영향의 조사·예측· 평가 및		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환경보전 방안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동· 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2. 대기질·악취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영향을 예측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대기질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수질(지표·지 하), 해양환 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 진동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6. 경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강당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天로 흡행되는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7.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전파장해 및 일조장해 발생 시설물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전파장해, 일조장해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인구, 주거, 산업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VⅢ. 부록	1. 인용 분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3. 용어 해설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법제처 99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8]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 (제38조 관련)

1.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지역별로 세분된 지역으로서 적용지역 및 대상, 그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적	용 지 역	대 상 면 적	비고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30,000㎡ 미만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30,000㎡ 미만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30,000㎡ 미만	
농	림 지 역	7,500㎡이상 30,000㎡ 미만	

2) 상기 1)항의 적용지역에서의 적용대상은 다음 사업에 한함

사 업 구 분	적 용 대 상
공장 조성 사업	공장(부대 창고, 야적장 포함)
창고 조성 사업	창고(야적장, 적치장)
주택 건설 사업	전원 주택 단지(연접 조성 제외)
체육 시설 조성 사업	소규모 운동장에 한함
교통 시설 설치 사업	주차장 시설에 한함
공간 시설 설치 사업	공간 시설(공원 포함, 유원지 제외)
개간 사업	개간 사업(초지 조성 포함)
종자관련시설 설치 사업	종자 연구ㆍ생산ㆍ가공 등의 시설
육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태양광 발전시설(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1) 사업 계획 및 주요 환경 현황

	사업	목적						
	추진	절차						
① 사업개요	사	설명						
ጠ ላኒቭላኔም	위	치						
	면 조	(m²)	업 종	사	업시행자	승인기:	관	사업기간
	구	분	공장용지		녹지	도로		기타용지
② 토지이용계획	← モ 면적(m²)							
		(%)						
	구	분	I 등급		П #	통급		Ⅲ통급
③ 생태·자연도	면적(m') 비율(%)							
	용도지역·지구·구 역							
	구분		임야	전		답		기타
④ 토지이용현황	지목	면적(m²)				-		
		비율(%)						
	구		해당여부	최단	이격거리		비	<u>. </u>
						※ 도로의 경우 차선수, 폭 등		
		·철도					기	
⑤ 시설물 현황 (사업부지경계로		시설						
부터 300m이내)		학교 등)						
	공장・심	·업단지				※ 명칭,	주요	업종 등 기재
	환경기	초시설						
	(취ㆍ정수	'장 포함)						
			도(축척 1:3,000	내지	1:5,000)			
⑥ 별도		사연도 도면		1-1-1-	-1			
첨부자료			점에서 활영한 현 및 시설물배치계:		신			
	0 ±/1	ক⁄ ব্∡ :	첫 기원판매시계:	I				

법제처 101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 계획관리지역 입지제한 공장(별표 20 자목)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 1종-3종 -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질 1종-4종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등은 제외[(가)-(마)]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유기용 제류 발생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 가공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 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 등급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통합지침」제36조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법제처 102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분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② 「산업입지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 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다만, 임업진흥권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편입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함)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③ 기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또는 입지제한 지역	
④ 별도 첨부자료	※ 위 검토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 자료 첨부	

3) 중점 환경영향 검토 체크리스트

(1) 지형 관련

	*	대상지역에	산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	---	-------	-----	------	----	-----	-----	-----	--	--	--	--

□ 현 황

	구분	0 ~ 25 m	25~50m	50~75m	75~100m	100m이상	
① HI	면적(㎡)						
	비율(%)						
	구분	0~5°	5~10°	10 ~ 20°	20~30°	30°이상	
② 경사도	면적(㎡)						
	비율(%)						
③ 최대 절5	트사면고(m)						
④ 최대 4	성토고(m)						
⑤ 별도	첨부자료	○ 대상지역 표	E고분석도, 경시	·분석도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증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생태 축이 형성되어 있는가?		○ 생태 축 현황 도면○ 생태 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보전 대책에 관한 자료
사면 비율이 15% 이상인가?		○ 부지 정지 계획 및 사면 발생 구간에 관한 분석 자료○ 사면 안정 및 보호 대책○ 공사 시 토사 유출 저감 대책
○ 부지 내 표고차가 15m 이상인가?		○ 종·횡단면도
○ 절토사면고가 6m 이상(2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총 높이가 15m 이상) 또는 건물 높이의 2배 이상 발생하는가?		○ 지형 개변 및 절·성토량 최소화 대책○ 공사 시 토사 유출 저감 대책
○ 산지의 5부 능선 이상에 입지하는가?		○ 경관 영향 검토 및 경관 부조화 방지 대책

법제처 104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자연생태(동ㆍ식물상) 관련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대상 지역에 산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현황 ①,③)
 - 대상 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출현 또는 서식하는 경우(현황 ②,③)
 - 대상 지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법정보호종 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등 포함) 또는 철새 도래지가 위치하는 경우(현황 ②,③)

□ 현황

	구분	2등급 이상	3등급	4등급	4등급 미만
① 식생보전등급	식생유형				
	면적(m²)				
	비율(%)				
	구분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기타
② 동물상	주요 분포종				
	법정보호종				
③ 별도 첨	부 자료		○ 식생보전등급 ○ 주요 출현·서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인 지역이 훼 손되는가?		○ 훼손 면적(비율), 훼손 수목량 분석 자료 ○ 생대적 보전 가치 분석 자료(급경사지 여부 포함) ○ 식생 훼손 최소화 대책(원형 보전, 사업 계획 변경, 대체 녹지 조성 등)
○ 법정보호종이 출현·서식하거나 서식지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가?		○ 법정보호종 출현·서식 위치도 및 사진 ○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대책(원형 보전, 대체 서식지 조성 등)

(3) 대기(악취, 소음 · 진동 포함) 관련

법제처 105 국가법령정보센터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대상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정온시설(주택, 학교 등)이 위치하는 경우
 - 대상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환경규제지역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으로부터 1km 이내인 경우

□ 현 황

(단위 : ppm, дқ/m²)

	7.8	아황산기	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	소	미세먼지
	구분	(SO ₂)		(CO)	(NO2)		(PM-10)
① 대기환경기준	연간						
	24시간						
(대상지역)	(또는						
	8시간)						
	1시간						
	연간						
② 대기질 측정자료	24시간						
(대상지 주변 3개	(또는						
지점 평균)	8시간)						
	1시간						
③ 소음·진동		소음		낮	진동		낮
@ 1 8 7 9	가 발 변 변 발					밤	
④ 별도 첨부	○ 정온시설	(주택,	, 학교 등) 분포 현	황도			
등 원도 생수	^r <u>≖</u>	○ 대기질 등	측정자.	료(조사지점, 위치.	도, 3개 지점	측정	치 등)

※ 현황①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환경기준)을 참고, ②의 경우 환경부 대기측정망 등 공공기관 자료 활용 가능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업종 및 시설의 특성상 공사·운영 시 (특정)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진동 을 발생시키는가?		 ○ 공사·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진동 발생 예측량 분석 자료 공정도 및 배출 시설 설치 내역서 등 ○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료 ○ 영향 저감 대책(발생·배출량 저감,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강화,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4) 수질 관련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운영 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하천 또는 호소에 직접 방류하는 경우(공공처리시설 등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현황 ①~③)
 - 대상지역이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 100m 이내인 경우(현황 ③)
 - 대상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4대강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10km 이내인 경우(현황 ④)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인 경우(현황 ④)

□ 현 황

① 수질환경기준 (대상지 주변 방류하천·호소)	구분 하천 호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화학적 요구 (CO: (mg/	량 D)	(↑물질량 (SS) mg/L)	흥인 (T-P) (mg/L)	총질소 (T-N) (mg/L)
② 수질 측정자료 (대상지 주변 3개 지점 평균)	하천 호소			\leq			\times	
③ 방류 하천·호소 국가하천·지방하천		수계	명칭	하천	구분	하천연징	최단 이격거	리 비고
④ 별도 첨부자.	료	○ 수질오염총	1역 또는 수	-변구역 시행 2	취의 분	포 현황 5	및 이격 거리에	관한 자료 기개발 부하량

※ 현황①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환경기준)을 참고, ②의 경우 환경부 수질측정망 등 공공기관 자료 활용 가능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업종 및 시설의 특성상 공사·운영 시 (특		○ 공사·운영 시 오·폐수 발생, 토사 유
정)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가?		출 예측량 분석 자료 - 공정도 및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 오염 물질이 하천·호소 등에 유입(공공처		- 등정도 및 매출시설 설치내극시 등 ○ 영향 저감 대책(오·폐수 처리 대책, 오
리시설 등에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되는가?		염 방지 시설 설치, 토사 유출 방지 대
		책,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점오염물
		질 저감 대책 등)

(5) 경관 관련

- ※ 사업 면적이 1만째 이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 보전 관련 지역·지구·구역(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이 분포하는 경우
 - 표고 300m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 높이의 50% 이상인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 「하천법」의 국가 및 지방하천의 양안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는 경우

□ 현 황

① 환경 관련 명 칭						
지역 현황	포함 면적(m²)			이격거리(m)	
② 입지 지역	班 고(m)		능선의	부 입지 여부		
	하천명]국가하천	□지방하천	이격거리(m)	
③ 주요 7	경관 자원	□산림녹지 □수	·경관 □·	농촌경관 □역	역사문화 □생태	개경 관
④ 자연경관심]의 대상 여부	□대상 □비대상	심의대	귀상 내용		
⑤ 별도 첫	첨부 자료	0 주	변 경관 7	사원을 표기한	지형도면	

□ 중점 검토 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사업 시행으로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경관에 악영향이 우려되는가? 		○ 경관 영향 분석 및 경관 변화와 훼손 유형에 따른 훼손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자료
○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 자원으로 향하는 조망 경관 확보가 가능한가?		 주요 조망점 위치를 표시한 도면, 조망 점별 전경 사진, 경관 자원 현황 자료
○ 배후의 자연 스카이라인이 차폐되거나 주변 자연 지형과 부조화가 발생되는가?		○ 건축물의 높이(충수) 및 폭, 부속 구조 물(굴뚝 등)의 높이, 부지 경계부 등의 녹지 조성 계획에 관한 자료

법제처 108 국가법령정보센터

(6) 해양환경 관련

※ 해안가에 입지하거나 운영 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해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공공처리시설 등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현 황

① 해역환경기준 (대상지 주변 방류 해역)	구분	수소이온농5 (pH)	화학적 로 요구 (CO) (mg/	량 D)	(·산소량 DO) ng/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해역							
② 수질 측정								
자료(대상지 주변	해역							
3개 지점 평균)								
③ 방류 해역의 환경	기준 및	수계	명칭	붕	급	하천연징	최단 이격기	리 비고
		하천						
প্ৰামা প্ৰ	이격거리 현황					_		
④ 별도 첨부 자	·료	해역 - ○ 수질 측정 자료(조사지점, 위치도, 3개 지점 측정치 등) ○ 특별대책지역 등 보호 구역의 분포 현황 및 이격거리에 관한 자료						

[※] 현황①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환경기준)을 참고, ②의 경우 국토해양부 측정망 등 공공기관 자료 활용 가능

□ 중점 검토 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업종 및 시설의 특성상 공사·운영 시 (특		○ 공사·운영 시 오·폐수 발생, 토사
정)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가?		유출 예측량 분석 자료
		- 공정도 및 배출 시설 설치 내역서 등
○ 오염물질이 해역에 직접 유입(공공처리시설		○ 영향 저감 대책(오·폐수 처리 대책, 오
등에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되는가?		염 방지 시설 설치, 토사 유출 방지 대
		책,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점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
○ 사업지역 주변에 특별관리해역, 수산자원보		○ 특별관리해역, 습지(갯벌) 등 현황, 훼손
전지구 등이나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갯		여부 및 보전 대책
벌) 등이 존재하는가?		

법제처 109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9]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방법(제40조 관련)

1. 일반사항

-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평 가 예측 결과와 공사·운영 시 나타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주변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 립한다.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조사 방법(시기, 지점, 항목 등)과 동일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 관리를 통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보전 대책이 적기에 이행되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환경관리 계획

구	분	작성 방법
	조사기간	○ 규칙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에 따르되, 영향예측에 따른 환경영향 및 불확실성의 정도, 주변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기간·주기·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조사항목 및 내용	 ○ 평가항목별로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 조사항목은 환경변화의 감시,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 공사·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비교·평가될 수있도록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환경기준, 악취,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서식현황 등에 대해 실시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조사항목은 제외한다.
조사지역 및 지점		 ○ 조사지역은 평가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되, 예측지역이 아니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하거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 ○ 조사지점은 영향 예측 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조사주기 및 방법	 ○ 해당 사업의 공사 시, 운영 시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 조사주기는 환경변화 및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월, 분기, 반기, 연 등) ○ 환경영향평가 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법제처		언을 수 있는10조사방법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여진 항목은 등 방법에 의하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조사항목별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기 타	○ 공사·운영 시 평가항목별 조사항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을 총괄 도표 및 도면을 활용하여 기재한다.
나. 환경관리	협의내용 관리	 ○ 해당 사업의 공사·운영 시 협의내용관리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한다. ○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조직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 주체, 구체적인 환경관리계획 수립 우립 일정(착공 전 등) 등을 제시한다.
계획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의 확인 및 조치	○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관리과정에서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 및 환경목표기준 초과 등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거나 발생될 경우의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법제처 111 국가법령정보센터

3.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예시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 기 질	공사 시	환경기준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항목은 제외 할 수 있다)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환경영향평 가시 조사예측한 지점	대기오염공 정시험기준	분기 1회 이상
	운영 시	n	"	"	"	반기 1회 이상
소 음	공사 시	"	"	"	소음·진동공 정시험기준	분기 1회 이상
	운영 시	"	n	"	n	반기 1회 이상
수 질	공사 시	n	n	"	수질오염공 정시험기준	분기 1회 이상
	운영 시	"	"	"	"	반기 1회 이상
악 취 (조사대상 으로	공사 시	악취농도의 순간농도 및 출현빈도	평가서 및 협의서에서 지정된 지역	"	악취공정시 험기준	반기 1회 이상
지정시)	운영 시	"	n	"	n	연 l회 이상
지형·지질 (조사대상 으로 지정시)	공사 시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된 지형·지 질의 형태등 지하수로 인한 지반 침하 영향 등 	n	n	현지조사	반기 1회 이상
	운영 시	"	n	"	n	연 1회 이상
동・식물상 (조사대상 으로 지정시)	공사 시	보호가치가 있어 지정된 통·식물 서식현황 등	n	"	현지조사 및 탐문 조사	반기 1회 이상
131	운영 시	n	"	"	"	연 1회 이상

[※] 조사주기는 사업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를 통해 조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법제처 112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0]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제41조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l. 주변환경피 해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별 영향범위를 포함한다) ○ 해당사업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환경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	○ 해당 사업의 착공시부터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다.
2. 주변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경우 ○ 소음·진동 등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기준이 초과된 경우 ○ 물고기 폐사, 기름 유출 등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즉시 통보토록 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상기내용에 준하는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보전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통보시기 - 해당 사업으로 환경피해가 : : 지체 없이 : 제 없이 : 독별한 사정· 및을 경우 최대 24시간 0 및 내용 - 해당 사업으로 환경피해 등 발견 등으로 추가 조치가 - 법정보호종의 경우 서식지 경우는 제외한다. ※ 통보시기는 공휴일과·토요 ○ 통보내용 -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계획		 해당 사업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오염사고, 보호종의 훼손 등) : 지체 없이 ※ "지체 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신속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 - 해당 사업으로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법정보호종의 발견 등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 5일 이내 ^ 법정보호종의 경우 서식지(번식지 및 월동지 등)가 아닌 단순 이동인 경우는 제외한다. ※ 통보시기는 공휴일과·토요일을 포함한다.
법제처 하되, 현장에서 柔3 조치가 가능하고 환경피해를 취업함?		

구 분	주요 내용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조치내용과 결과 통보
통보방법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 이용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 기관의 장 등과 조치방안 협의 ○ 환경피해방지 조치사항의 유형(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수질 등)에 따라 세부 조치계획 수립・시행 ○ 세부 조치계획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가에게 자문을 얻거나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 요청

법제처 114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1]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제42조 관련)

1. 환경현황 분야

- 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측정기록부
- ② 분석(측정)기기에서 생성된 파일 원본
- ③ 분석(측정)기기에서 생성된 출력물 원본
- ④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중에서 생산되는 각종 단계별 결과값 등 에 대한 기록물 일체
- ⑤ 계산식이 포함된 분석일지 및 검량선 등
- ⑤ 조사지점명·시기·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경로 및 사진첩
- ① 조사당시 특이사항 기록물
- ⑧ 현지확인 조사자, 조사일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장신청서, 차량운행 일지,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동영상 자료 등)
- ※ 소음·진동은 ④~⑤항,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④항 생략가능

2. 생태계 분야

- ① 조사기관(조사자의 인적사항 등 포함)의 인증 도장이 날인된 조사결과서
- ② 현지조사표(현장조사시의 기록표 등 평가서상 제시된 결과표의 중간과정의 기록물 포함)
 - ③ 현지조사시 주민 등을 통한 탐문조사표(탐문 대상자의 개략 인적사항 포함)
 - ④ 조사지점명·시기·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경로 및 사진첩
 - ⑤ 조사당시 특이사항 기록물
 - ⑥ 현지확인 조사자, 조사일자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장신청서, 차량운행 일지,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동영상 자료 등)

[별지 제1호서식]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① 사 업 명				
① 사업장 소재지				
③ 사업자		④ 전화번호		
⑤ 협의기관		⑥ 숭인기관		
⑦ 환경피해발생 및 우려내용				
 ⑧ 환경피해방지 조치내용 				
⑨ 향후 조치계획				

법제처 116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				
① 사 업 명				
② 비공개 요청대상	□ 평가서 초안 □ 평가서(간이, 재협의 등) □ 보완서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③ 비공개 요청사유				
④ 비공개 요청범위	□ 전부 비공개 □ 일부 비공개 (비공개 대상범위 :)			
⑤ 추후 공개 가능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공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작성 방법

- ① "사업명"란은 평가서등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 ② "비공개 요청대상"란은 비공개하고자 하는 평가서등에 "○"표를 한다.
- ③ "비공개 요청사유"에는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④ "비공개 요청범위"에는 해당 부분에 "∨"표를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 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⑤ "추후 공개 가능시기"란에는 "협의완료 후",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준공 후" 또는 "공개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⑥ "신청인"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의 명의로 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지)]

법제처 117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제23조, 제33조, 제37조 관련)

- 1. 용역구분 :
- 2. 사업유형 :
- 3. 용역기간:
- 4. 사업규모:
- 5. 대행 및 재대행 계약내역
- 가, 대행 계약내역

구 분	대행금액(원)①	산정기준 금액(원)②	대행률(%) (①/②×100)
직접인건비			
직 접 경 비			
제 경 비			
기 술 료			
부가가치세			
합 계			

- ※ 1. ①의 대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 2. ②의 금액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80호)」에 의한 산 정가를 표기
- 나. 재대행 계약내역(VAT포함)

구	쁀	재대행금액(원)①	발주처와 계약된 대행금액(원)②	재대행률(%) (①/②×100)
환경질측정				
자연생태계조사				

- ※ 1. ②의 금액은 발주처와 계약된 대행 내역금액을 적되, 해당부분이 대행내역의 직접경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내역금액을 그대로 적고, 해당부분이 직접인건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에 있는 금액만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하여 표기(직접경비+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 2. 제경비=직접인건비×(대행계약서의 제경비율)×5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대행계약서의 기술료율)×50%
- 6. 첨부 : 1. 대행계약서 갑지 사본 및 증빙자료
 - 2. 재대행계약서 갑지 사본 및 증빙자료
 - 3. 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산정 근거
 - 4.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적용대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의 대행 업무에 적용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등 적정 대행비용의 산정

- 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영 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80호, '14.5.23)'에 따른다.
- 나. 제대행비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대행 할 경우 제대행률은 해당부문 낙찰내역에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제대행자의 제경비 및 기술료는 해당 금액의 50%를 적용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자의 재대행 관리

- 가. 소속직원을 제대행자의 현장조사 등에 분야별로 분기 1회 이상 참여시켜 측정 및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제대행자로부터 업무 수행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거 짓 부실 조사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혐의기관의 검토사항

-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를 확인하고 저가 대행 및 저 가 제대행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여야 한다.
- 나.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환경영향평가업자, 제대행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측정 자료, 참여인력, 비용지출현 황 등 조사·측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의 인·허가 기관등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저가 대행 및 저가 재대행 사업의 구분

- 저가 대행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대비 65% 미만인 경 우
- 저가 재대행 : 분야별로 대행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